

---

#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

2023. 1.

## 일러두기

- 본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자설명서』는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및 2023년 중도정산에 활용됩니다.
- 본 설명서는 2022년 1, 2월 나이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전국 교육청, 산하기관 및 11,000여개 각급 학교의 74만 교직원의 급여 업무 처리에 활용됩니다.
- 교육청 및 학교 급여 담당자는 본 설명서 전체를 참고하시고, 연말정산대상자(교직원)는 설명서 II-5(31~50page)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이후 1월 18일(예정)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도 전자과일 업로드 기능(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급여 업무 담당자의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작업 기능은 현재도 가능)
- 본 설명서의 내용은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 [사용자설명서]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계속 갱신됩니다.
-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에 따른 나이스 개선사항은 32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에 질의로 등록 해주시거나, 시·도교육청 나이스 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b>I.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요</b> .....	<b>1</b>
1.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요약) .....	1
2.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10
<b>II.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b> .....	<b>11</b>
1.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구조 및 처리 흐름 .....	11
2. 연말정산 기준 확인 .....	13
3. 연말정산 대상자 및 자료생성 .....	14
4. 연말정산 생성 자료 확인.....	17
5.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 .....	31
※ 국세청 전자파일 업로드.....	34
6. 개인별공제자료 확인 및 검토 .....	50
7. 연말정산 처리 .....	56
<b>III. 참고사항</b> .....	<b>66</b>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66
2. 서식 변경사항.....	73
3. 나이스 세금계산 체계(급여 원천징수).....	79

# I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

##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요약)

구 분	종 전	개 정
<p>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p> <p>○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p> <p>-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한도) 월 20만원 이내</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p> <p>○ (좌 동)</p> <p>- (좌 동)</p> <p>-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lt;적용시기&gt;</p> <p>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p>
<p>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p>	<p><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p> <p>○ (대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p> <p>○ (소득공제율) 40%</p> <p>○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p>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확대</p> <p>○ (좌 동)</p> <p>○ (좌 동)</p> <p>○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lt;적용시기&gt;</p> <p>2023.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p>

구 분	종 전	개 정																						
<p>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p>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b>&lt;추 가&gt;</b></p> <p><input type="checkbox"/>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b>&lt;추 가&gt;</b></p> <p><b>&lt;신 설&gt;</b></p>	<p><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p> <p><input type="checkbox"/>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p> <p><input type="checkbox"/>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p> <p><input type="checkbox"/>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 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p> <p><input type="checkbox"/>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라 판단</p> <p><input type="checkbox"/> 난임시술비 규정</p> <p><input type="checkbox"/>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p> <p><b>&lt;적용시기&gt;</b>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p>																						
<p>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p>	<p><input type="checkbox"/> '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한시 상향</p> <table border="1" data-bbox="370 1563 900 1697">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r> <th>'21년</th> <th>'22년~</th> </tr> </thead> <tbody> <tr> <td>1천만원 이하</td> <td>20%</td> <td>15%</td> </tr> <tr> <td>1천만원 초과분</td> <td>35%</td> <td>30%</td> </tr> </tbody> </table> <p>※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p>	구 분	공제율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p><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상향적용 연장</p> <table border="1" data-bbox="912 1563 1442 1697">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r> <th>'21.'22년</th> <th>'23년~</th> </tr> </thead> <tbody> <tr> <td>1천만원 이하</td> <td>20%</td> <td>15%</td> </tr> <tr> <td>1천만원 초과분</td> <td>35%</td> <td>30%</td> </tr> </tbody> </table> <p>※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p> <p><b>&lt;적용시기&gt;</b> 2022.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p>	구 분	공제율		'21.'22년	'23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구 분	공제율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구 분	공제율																							
	'21.'22년	'23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구 분	종 전	개 정
<p>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p>	<p><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 기여형퇴직연금</li> <l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li> <li>○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p>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li> </ul>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신설 (2022년 4월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lt;적용시기&gt; 2022.4.14. 이후부터 적용</p>
<p>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p>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의 인출순서</p> <p>[당해 과세기간 납입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이전 과세기간 납입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li> <li>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li> <li>④ 이연퇴직소득</li> <li>⑤ 운용수익 등</li> </ul>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좌 동)</li> <li>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li> </ul> <p>* ISA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p> <p>(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lt;적용시기&gt;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 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p>

구 분	종 전	개 정
<p>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 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p>	<p><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p> <p><input type="checkbox"/>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input type="checkbox"/>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 한도 적용 명확화</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p> <p>* Min(전환금액×10%, 300만원)</p>
<p>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의 원천징수*</p> <p>*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 <p><input type="checkbox"/>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p>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p>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p> <p>*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p> <p>- (적용기한) '24.12.31.</p> <p style="text-align: center;">&lt;적용시기&gt;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p>

구 분	종 전	개 정
<p>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분할 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 특례</p> <p><input type="checkbox"/>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p> <p><input type="checkbox"/> (특례내용)</p> <p>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 이익 비과세</p> <p>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p><input type="checkbox"/>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p> <p>①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원 → 5천만원</p> <p>② (분할납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p> <p><input type="checkbox"/> 2024.12.31.</p> <p>&lt;적용시기&gt; 2022.1.1. 이후 발생하는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p>
<p>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p>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p> <p><input type="checkbox"/> (특례내용)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p> <p><input type="checkbox"/>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p> <p>- 단,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p>	<p><input type="checkbox"/> 특례 적용범위 확대 등 및 적용기한 연장</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p> <p>-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행사가액</p> <p><input type="checkbox"/> 2024.12.31.</p> <p>&lt;적용시기&gt; 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p>

구 분	종 전	개 정
<p>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p>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p>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p> <p><input type="checkbox"/> (특례내용) 종합소득세를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적용기한 내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2023.12.31.</p>
<p>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p><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p> <p><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p> <p><input type="checkbox"/>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p> <p><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가입한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청년에 대한 감면을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4.12.31.  &lt;적용시기&gt; 20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p>
<p>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p>	<p><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 <p><input type="checkbox"/>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산·출산·육아·재녀교육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p> <p><input type="checkbox"/> (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p>	<p><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p> &lt;적용시기&gt; 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p>

구 분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b>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b></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li> <li><input type="radio"/> (감면율) 70% (청년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li> </ul> </li> <li><input type="radio"/>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li> <li><input type="radio"/>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li> </ul> <p><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1.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좌 동)</p> </div> <p><input type="radio"/> 2023.12.31.</p>
<p style="text-align: center;"><b>고용유지중소 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b></p>	<p><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radio"/>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li> </ul> </li> <li><input type="radio"/>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li> </ul> </li> <li><input type="radio"/>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li> </ul> </li> </ul> <p><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1.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input type="radio"/> 2023.12.31.</p>

구 분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p> <p>○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p> <p>*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p> <p>-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p> <p>○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p> <p>○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p> <p>○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p> <p>- 다만,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p> <p>○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p> <p>-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p> <p>○ (적용기한) 2023.12.31.까지 가입분</p> <p>※ 농어촌특별세 비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lt;적용시기&gt;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p> <p>○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를 확인된 것</p> <p>○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input type="checkbox"/> 실명 확인방식 추가</p> <p>○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p> <p style="text-align: center;">&lt;적용시기&gt;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구 분	종 전	개 정																																								
<b>월세액 세액공제 확대</b>	<input type="checkbox"/> 월세액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span style="padding-left: 40px;">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span>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연 75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 <span style="padding-left: 40px;">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span> <input type="checkbox"/> (좌 등)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b>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b>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r> <td>⑤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 ① ~ ④ 금액의 합계액</p>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2.12.31.  <신 설>  <input type="checkbox"/>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항 목</th> <th style="width: 50%;">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대중교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r> <td>'21년 소비증가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⑤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10%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21년 소비증가분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구 분</th> <th style="width: 50%;">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좌 등)</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 </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 (80%)</td> </tr> <tr> <td>⑤ '22년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 ① ~ ④ 금액의 합계액</p> <input type="checkbox"/> '25.12.31.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input type="checkbox"/>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항 목</th> <th style="width: 50%;">한도 추가</th> </tr> </thead> <tbody> <tr> <td>전통시장</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좌 등)</td> </tr> <tr> <td>대중교통</td> </tr> <tr> <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 </tr> <tr> <td>'22년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body> </table> <p>&lt;적용시기&gt;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p>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좌 등)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⑤ '22년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20%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좌 등)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22년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100만원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⑤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10%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21년 소비증가분	100만원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좌 등)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⑤ '22년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20%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좌 등)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22년 소비증가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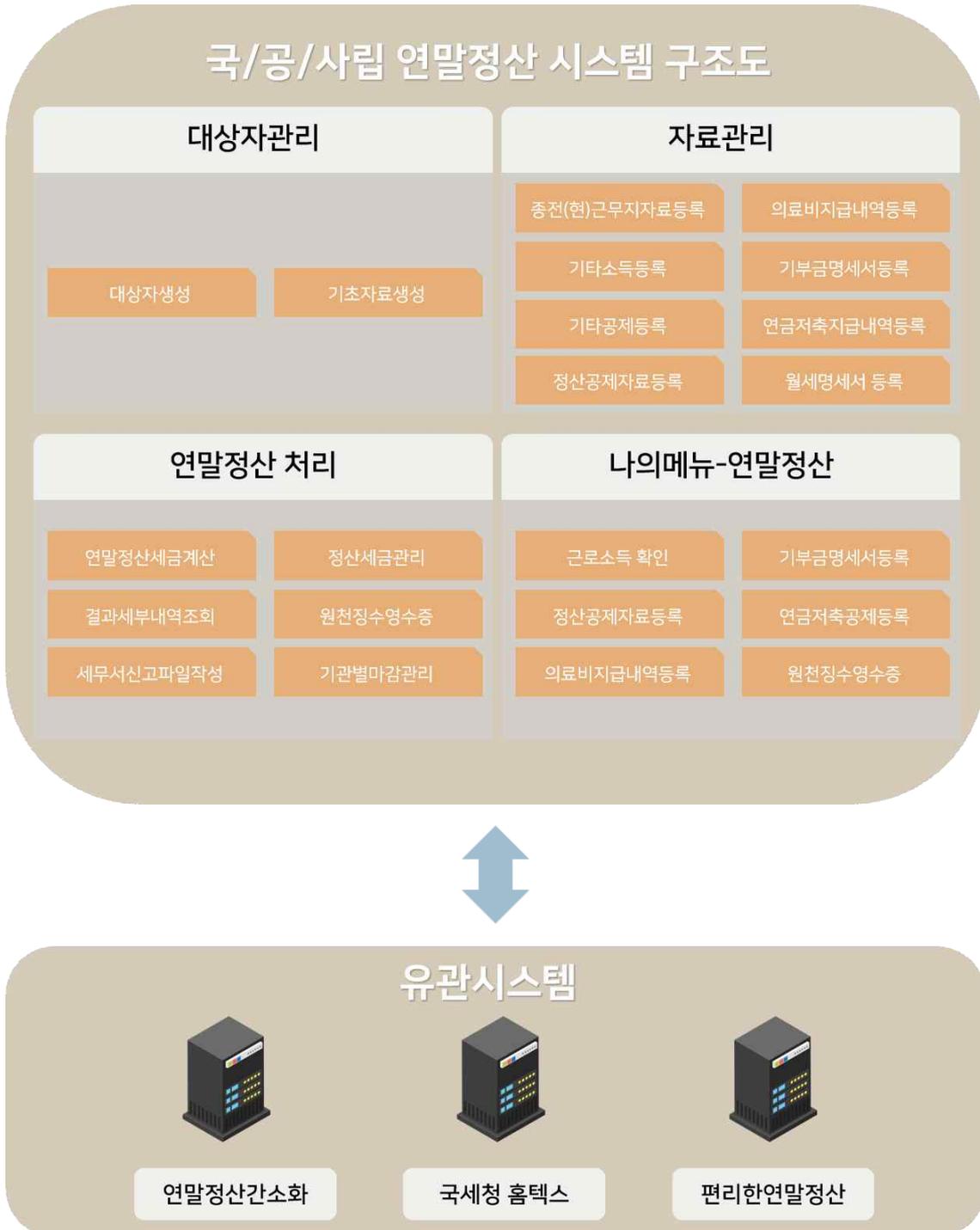
## 2 2022년도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내용	예시	비고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41,000,000	자동산정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연구보조비 월20만원 이내,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 연장근로, 식비(월 10만원이하),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이하)	- 1,000,000	자동산정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신용카드공제 적용 시 활용	40,000,000	자동산정																											
(-)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11,250,000	자동산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투자조합출자, 소상공인 한도 적용 기준	28,750,000	자동산정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150, 추가공제(경로100, 장애인200, 부녀자50, 한부모100)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전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공적), 주택자금(원리금,이자),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근로자임금삭감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 4,750,000	※ 나이스 등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4,000,000	자동산정																											
(X) 기본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 구간</th> <th>세율</th> <th>산출세액 계산</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d>과세표준의 6%</td> </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 <td>15%</td> <td>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24%</td> <td>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35%</td> <td>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8%</td> <td>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40%</td> <td>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42%</td> <td>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d>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2,520,000	자동산정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520,000	자동산정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70%(청년 90%)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55%, 초과30%(74/66/50 한도) ○ 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 퇴직연금, 연금저축 12%(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자는 15%) · 50세 미만: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2억 초과자는 300만원)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일반-12%(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15%(100만원 추가 한도) - 의료비(총급여액의3% 초과액) : 일반15%,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20% - 교육비 : 15% /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지정(종교), 지정(종교 외) ○ 표준세액공제: 연13만원(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미신청시) ○ 납세조합공제 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95~97년),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 : 17%(55백만원이하), 15%(7천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750만원 한도	1,400,000	※ 나이스 등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1,120,000	자동산정																											
(-)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1,970,000	자동산정																											
차감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850,000	자동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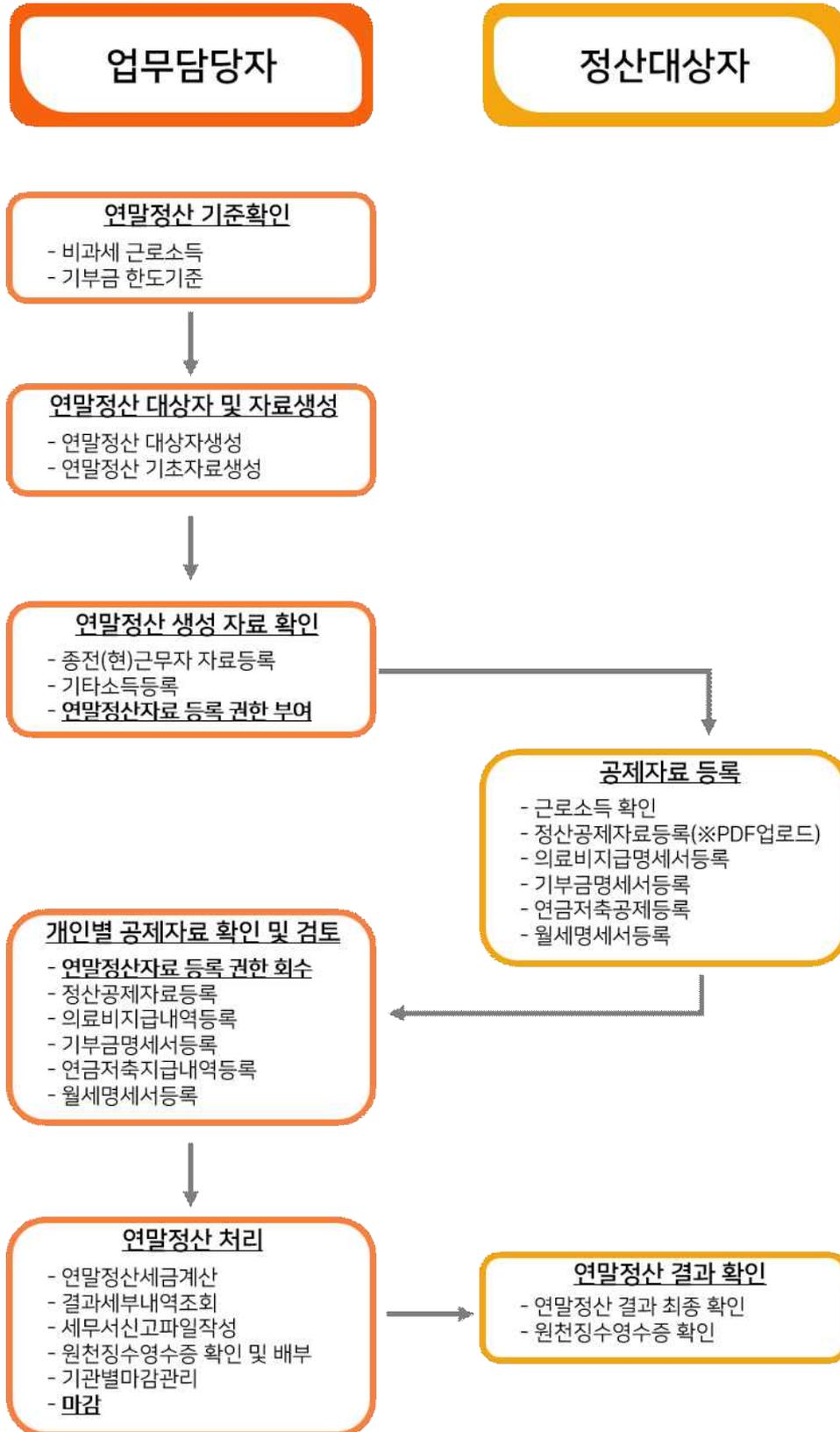
## Ⅱ 2022년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 1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구조 및 처리 흐름

#### 1.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구조도



## 2. 나이스 연말정산 처리 흐름도



## 2 연말정산 기준 확인

### 1. 비과세수당 확인

순번	비과세코드	수당코드	수당명칭	비과세항목
1	H06	GCBA00	겸직수당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2	H06	GHAA00	교원연구비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3	H06	GHAA01	교원연구비1(40-34호)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4	H06	GHAA02	교원연구비1(33-24호)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5	H06	GHAA03	교원연구비1(23-14호)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6	H06	GHAA04	교원연구비1(13호이하)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7	H06	GHAA05	교원연구비2(37호이상)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8	H06	GHAA06	교원연구비2(36-28호)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9	H06	GHAA07	교원연구비2(27-18호)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10	H06	GHAA08	교원연구비2(17호이하)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11	H06	GHAD00	학생지도연구비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12	H06	GHAD01	학생지도연구비(담임)	18-4 연구보조비-유초중등교육법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기준관리-수당기준관리-비과세 근로소득]
- 2) 나이스에서 비과세로 분류하는 수당을 해당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2. 기부금 한도 기준 (현재는 PDF로 업로드 하므로, 기부금한도 조정 불필요)

순번	년도	관할기관	공제코드	공제명칭	기부금구분	기부금한도
1	2022	교육부	J01	전교조회비	지정기부금	0
2	2022	교육부	J02	교원연합회비	지정기부금	0
3	2022	교육부	J03	한교조회비	지정기부금	0
4	2022	교육부	J04	작은사랑의씨앗	지정기부금	0
5	2022	교육부	J05	특수교육협회비	지정기부금	0
6	2022	교육부	J06	수재민들기	법정기부금	0
7	2022	교육부	J07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정기부금	0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기준관리-공제기준관리-기부금한도기준]
- 2) 나이스에 입력되는 기부금(공제코드가 J로 시작)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메뉴이다. 본청 급여담당자만 설정이 가능하며, 연도와 관할교육청을 선택한 후 기부금한도를 입력하여 저장한다.

3) 한도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금액을 0으로 설정한다.

※ 한도금액 입력 예시: 급여에서 10,000원을 공제하였는데 8,000원까지만 기부금으로 인정해야할 경우, 기부금한도에 8,000원을 입력

※ 연말정산 자료생성 전 급여에서 공제 시 사용했던 코드의 종류가 정확한지(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잘못 사용한 경우(법정기부금인데 지정기부금 코드 사용 등) 자료생성 전에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에 질의등록하여 수정 후 생성해야 한다.

### 3. 사용기관정보관리 확인

사용기관정보			
급여기관명	강원도교육청	영문법인명	KANGWON
우편번호	210924	전화번호	052052
도로명주소	강원 강릉시 가작로 10	도로명상세주소	(교동)
영문주소		시군구(주민세환급신청서)	중구
대표자(기관장)명	김ㅇㅇ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징수(보고)의무자	김ㅇㅇ	세무서코드(3자리)	123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기준관리-사용기관관리-사용기관정보관리]

2)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의 징수의무자 정보에 표시되는 정보가 입력되는 메뉴이다.

※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서코드 등 입력

## 3 연말정산 대상자 및 자료 생성

### 1. 대상자 선정

급여작업기관	기관명	전체대상(학교회계)	대상자생성(학교회계)	대상자 생성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8(1)	8(1)	생성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4(0)	4(0)	생성
강원도교육청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1(0)	1(0)	생성
강원도교육청	가야고등학교	7(6)	7(6)	생성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168(38)	163(39)	생성
강원도교육청	강원학생수련원	3(0)	3(0)	생성
합계		358(82)	353(83)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대상자관리-연말정산대상자생성]

2) 정산년월 및 정산구분을 입력하고 조회한 후, 전체 대상자생성을 한다.

- 2023년 1월 중도정산 설정 : 2023년 1월 현재 퇴직이고, 퇴직월이 2023년 1월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가 1월 급여에 반영된다.
  - 2022년 12월 연말정산 : 2022년 12월 현재 재직 및 휴직인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연말정산은 작업시점에 관계없이 정산년월을 반드시 **2022년 12월**로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는 기본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된다.
- 3) 개인별로 대상자 추가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4) 개인별로 대상자를 추가한 경우, 자료생성도 개인별로 생성해야한다.
- 전체로 자료생성을 할 경우, 기존에 작업한 자료가 초기화 된다.

**※ 중도정산자 처리업무 관련 유의사항**

- 2014년부터 중도정산 결과에 대한 홈택스 신고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중도정산 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등록한 후, 연도 중 세법 변경이 있고 이어 연말정산 작업 후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

**※ 비공무원인사에 등록된 학교회계직·기타직 중 나이스로 급여 작업한 이력이 없어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

- [원인] 나이스 급여 정보에 대상자의 인사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 [해결] 비공무원인사에 등록된 인사 정보를 급여로 가져오기 위해서 기초자료생성 작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 바랍니다.
  1. 비공무원인사기타직인사관리에서 재직여부가 재직인지, 급여자료생성여부 생성인지 확인 (퇴직상태이면 재직상태로 임시변경하여 대상자 생성 후 다시 퇴직상태로 설정)
  2. 국공(사)립급여-월급여-작업-기초자료생성에서 작업년월을 임의로 (2023년 1월) 선택한 다음 기관을 해당대상기관으로 선택 후 자료생성 진행
  3. 연말정산-대상자관리-연말정산대상자생성에서 해당 대상자 추가

**※ 지방공무원인사, 교원인사, 비공무원인사에 등록된 대상자만 연말정산 대상자로 생성 가능**

## 2. 기초자료 생성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대상자관리-연말정산기초자료생성]
- 2) 연말정산대상자의 연간급여실적, 가족사항등을 종전(현)근무지자료 및 정산공제 자료에 반영하는 메뉴이다.
- 3) 정산년월은 2022년 12월 연말정산으로 설정하고, 실적 생성할 전근무지, 현근무지의 기간을 설정한 후 자료초기화에 체크를 한다.
- 4) 전체기관, 선택기관 별 자료생성을 하면, 급여실적 및 가족사항 등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된다.
- 5) 전근무지, 현근무지의 자료초기화에 체크가 된 경우, 기존 생성된 자료나 담당자가 수정한 자료는 삭제되고 새로 생성이 되므로 최초 기초자료작성 시에는 모두 체크하여 작업해야하며, 이후 변경되는 대상자는 개인별로 추가하여 자료생성을 해야 한다.
- 6) 개인별 기초자료생성 작업을 할 경우, 우측 상단의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추가한 후 자료생성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 7) 화면 하단에는 기초자료생성작업의 작업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 전/현 근무지 자료생성 체크기능(초기화를 말하는지?)

- 전근무지 : 전근무지의 설정 기간 내 급여실적을 종전근무지자료에 반영한다. 기간제교사나 계약직 등 나이스를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연계하여 이전 근무지 실적이 반영된다.
- 현근무지 : 설정 기간 내 현재 소속기관의 급여실적을 현근무지자료에 반영한다.

### ※ 최초 기초자료 생성 시에는 반드시 전/현근무지 자료생성에 모두 체크하고 작업한다.

- **대상자를 개별로 등록하여 자료생성(개인)을 최초로 하는 경우에도 체크하고 작업한다.**

### ※ 가족사항 반영 관련 사항

- 연말정산 기초자료 생성 시 인적공제사항은 월급여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사항을 반영하여 생성한다. 단, 최초 기초자료생성 시에만 반영되므로 이후 인적공제 변동내역은 별도로 정산공제자료에 등록해야 한다. 월급여 가족사항에 본인이 누락된 경우, 정산공제자료의 인적공제에 자동으로 본인자료를 생성해준다.
- 자녀세액 공제 시 7세 미만인 경우 세액공제 제외

## 4 연말정산 생성 자료 확인

### 1. 종전(현)근무지 자료 확인 및 등록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 2) 연말정산 기초자료 생성 시 반영된 해당 정산년월의 급여실적을 확인하고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는 메뉴이다.

- 3) 급여실적이 누락된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누락된 실적을 추가할 수 있다.
- 4) 근무지/소득 탭에서는 전·현근무지의 급여, 상여 등의 소득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 근무지구분 : 종전근무지, 현근무지로 구분한다.
  - 사업자(년월) : 전근무지 실적인 경우 전근무지의 사업자번호가 표시되고, 현근무지 실적인 경우 지급된년월이 표시된다.
  - 근무처 : 종전근무지 실적의 경우 전근무지의 기관명이 표시되고, 현근무지 실적의 경우 [NEIS]로 표시된다.
  -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전근무지 실적의 경우 전근무지의 근무 시작일, 종료일을 반드시 등록해야한다.(현근무지의 경우 정산공제자료 등록 화면에서 확인하여 수정가능)
  - 급여총액 : 나이스 월급여에서 지급된 월별 수당총액이 표시된다.
    - ※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그밖의비과세(정액급식비 10만원,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됨
  - 상여총액 : 나이스 월급여에서 지급한 수당 중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성과상여금이 표시된다.
  - 소득음션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이 있는 경우 별도 확인하여 등록한다.
  -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우리사주조합인출금이 있는 경우 별도 확인하여 등록한다.

※ 상여총액 이란?

-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성과상여금

※ 종전현근무지 소득 관련 사항

- 전근무지의 실적이 있는 경우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누락한 경우 추후 홈택스 지급조서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여 신고 되지 않는다.
- 스톡옵션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은 전근무지가 사기업인 경우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해당 소득은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 표기되는 항목이다.
- 종전현근무지자료에 **마이너스 금액이 존재하면 홈택스 지급조서 신고가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금액은 다른 월의 금액과 조정하여 반드시 플러스 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
- 나이스에서 산출된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가 같을 경우(주로 기간제교원이 해당) 홈택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 근무지에 소득을 합산한 후 처리한다.**  
 ※ 종전근무지가 2개 이상이고, 종전근무지가 같을 경우도 하나로 합산하여 처리한다.

5) 비과세 탭에서는 전·현근무지의 각종 비과세 소득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년월)	근무처	연구활동비 비과세(H06)	벽지수당 비과세(H12)	종교 활동비(H17)	출산보육 비과세(Q01)	그 밖의 비과세	우리사주조합(50%) 비과세(Y02)
2022.01	NEIS	65,000	0	0	100,000	100,000	0
2022.02	NEIS	65,000	0	0	100,000	200,000	0
2022.03	NEIS	65,000	0	0	100,000	100,000	0
2022.04	NEIS	130,000	0	0	100,000	100,000	0
2022.05	NEIS	90,000	0	0	100,000	300,000	0
2022.06	NEIS	120,000	0	0	100,000	100,000	0
2022.07	NEIS	120,000	0	0	100,000	100,000	0
2022.08	NEIS	120,000	0	0	100,000	100,000	0
2022.09	NEIS	120,000	0	0	100,000	300,000	0
2022.10	NEIS	120,000	0	0	100,000	100,000	0
2022.11	NEIS	120,000	0	0	100,000	100,000	0
전근무지합계		0	0	0	0	0	0
현근무지합계		1,255,000	0	0	1,200,000	1,700,000	

- 연구활동비 비과세(H06) : 연구활동비 목적으로 지급된 수당(월 20만원 한도)
- 벽지수당 비과세(H12) : 연간 지급된 도서벽지수당 총액
- 종교활동비 비과세(H17) : 종교관련종사자가 지급받은 금액
- 출산보육비과세(Q01) : 6세미만 자녀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합(월 10만원 한도)
- 그 밖의 비과세 : 연구활동비/벽지수당/출산보육/종교활동비를 제외한 비과세 수당  
 ※ 육아휴직수당, 정액급식비는 2018년 귀속부터 그 밖의 비과세에 포함. (단,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육아휴직수당, 정액급식비가 비과세에 표시되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 비과세(Y02,Y03,Y04)** : 일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일원으로 주식배당소득을 받은 대상자는 입력
  - ※ **우리사주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율** : 2년~4년 50%, 4년~6년 75%, 6년이상 100%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U01)**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 비과세(Y02,Y03,Y04),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U01) 등**

- **교직원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지만, 전 근무지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비과세 탭에 등록해야 함.**

6) 소득감면 탭에서는 소득세감면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자(년월)	근무처	급여총액	상여총액	비과세 합계	조세조약상 감면액 (급여+상여-비과세)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50%)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70%)
2022.01	NEIS	2,976,300	1,182,340	265,000	0	0	
2022.02	NEIS	2,987,000	50,000	365,000	0	0	
2022.03	NEIS	3,215,600	50,000	265,000	0	0	
2022.04	NEIS	3,225,410	600,000	330,000	0	0	
2022.05	NEIS	3,218,520	41,000	490,000	0	0	
2022.06	NEIS	3,235,210	550,000	320,000	0	0	
2022.07	NEIS	4,256,100	1,145,000	320,000	0	0	
2022.08	NEIS	3,185,210	50,000	320,000	0	0	
2022.09	NEIS	4,169,520	50,000	520,000	0	0	
2022.10	NEIS	4,112,540	50,000	320,000	0	0	
2022.11	NEIS	3,625,100	50,000	320,000	0	0	
<b>전근무지합계</b>		<b>0</b>	<b>0</b>	<b>0</b>	<b>0</b>	<b>0</b>	
<b>현근무지합계</b>		<b>42,796,030</b>	<b>3,868,340</b>	<b>4,155,000</b>	<b>0</b>	<b>0</b>	

- **조세조약상 감면액(T20)** : 조세조약상 소득감면액 자동 계산
-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T10, T11, T12)** : 50%, 70%, 90%에 해당되는 금액 등록
  - ※ **2018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90% 감면항목 추가(중소기업 취업 청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중 일부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 란	비과세 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 12 3 아	G01	⑬-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H02	소득령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⑬-18 소득령 §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⑬-4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소득세법 § 12 3 자	H10	⑬-4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⑬-22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⑬-23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⑬-6 소득령 § 12 14 (취재수당)	○
			H12	⑬-7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
			H13	⑬-8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⑬-24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⑬-30 소득령 §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 12 3 차	I01	⑬-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모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⑬-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하	L01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 12 3 거	M01	⑬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⑬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⑬	소득령 § 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O01	⑬-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 12 3 머	Q01	⑬-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⑬-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 12 3 어	R11	⑬-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 12 3 저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구 조특법 § 15	S01	⑬-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U01	⑬-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Y02	⑬-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조특법 § 88의4⑥	Y03	⑬-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⑬-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 12 3 자	Y22	⑬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 18	T01	㉔-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㉔-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 § 19	T30	㉔-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 § 29조의6	T40	㉔-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T41	㉔-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조특법 § 18조의3	T50	㉔-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특법 § 30	T11	㉔-2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
		T12	㉔-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㉔-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㉔-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7) 공제 탭에서는 전·현근무지의 각종 공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년월)	근무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input type="checkbox"/>	2022.01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02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03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04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05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06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07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08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09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10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11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input type="checkbox"/>	2022.12	NEIS	191,250	0	45,600	533,350	0	0	0
전근무지합계			0	0	0	0	0	0	0
현근무지합계			2,295,000	0	547,200	6,400,200	0	0	0

- 건강보험 : 월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금액
  - 국민연금/고용보험 : 월급여시 공제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금액
  - 공무원연금 : 월급여시 공제된 일반기여금액, 소급기여금액, 일반과미납금액, 소급과미납금액이 반영. 추가기여금액은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기여금 공제의뢰에 등록된 금액을 반영하며, 합산반납금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 사학연금 : 월급여 시 사학연금 정기부담금이 반영
  - 군인연금 : 전근무지가 군대일 경우, 군인연금 공제액을 등록한다.
  - 별정우체국연금 : 전근무지가 우체국일 경우, 우체국연금 공제액을 등록한다.
- ※ PDF에도 건강보험 및 연금이 포함되지만, 나이스에서는 급여를 통해 공제한 건강보험료, 연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된다.

8) 세금/기부금 탭에서는 전·현근무지의 세금 및 기부금 공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정산년월: 2022년 12월 연말정산 | 성명: 김윤지 | 주민번호: [REDACTED]

세금/기부금 탭

사업자(년월)	근무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법정기부	지정기부	정치자금기부금
2022.01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2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03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4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5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06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7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08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9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10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11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12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전근무지합계		0	0	0	0	0	0
현근무지합계		382,510	38,150	0	0	11,160,000	0

-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 월급여시 공제된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가 반영된다.
- 법정기부 : 월급여시 공제한 법정기부금 공제액이 반영된다.
- 지정기부 : 월급여시 공제한 지정기부금 공제액이 반영된다.
- 정치자금기부금 : 월급여에서 공제한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이 반영된다.

※ 급여 원천징수 기부금

-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기부금은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세금기부금 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부금은 세액공제 계산 시 일절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정산년월: 2022년 12월 연말정산 | 성명: 김윤지 | 주민번호: [REDACTED]

세금/기부금 탭

사업자(년월)	근무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법정기부	지정기부	정치자금기부금
2022.01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2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03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4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5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06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7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08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09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10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2022.11	NEIS	28,090	2,800	0	0	930,000	0
2022.12	NEIS	34,580	3,450	0	0	930,000	0
전근무지합계		0	0	0	0	0	0
현근무지합계		382,510	38,150	0	0	11,160,000	0

※ 2017년 귀속분부터 해당되는 나이스 연말정산 기부금 입력 방법

- 기본적으로 모든 기부금(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기부금 포함)은 기부금명세서에 등록해야 한다.  
∴ 국세청 오류검증 기준 변경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기부금도 기부금명세서에 입력하여야 신고파일 검증 시 오류 없이 신고 가능하다.
- PDF 자료를 통해 업로드 한 기부금 자료는 ①기부금명세서와 ②정산공제자료등록(세액공제/명세) 탭과 ③인적공제 탭 화면 기부금 입력란 윗칸에 자동 반영 된다.
- PDF 자료상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부금(급여 원천 징수 기부금 포함)은 반드시 ①기부금명세서에 수기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료는 ②정산공제자료등록(세액공제/명세) 탭 과 ③인적공제 탭 아래 칸에 각각 자동으로 반영된다.
- 위 과정을 통해 기부금명세서 작성과 기부금이월금 등록이 마무리 되며, 기부금조정명세서 내용은 자동으로 작성된다.

※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이월기부금을 우선 산입하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을 산입

※ 기부금명세서 작성 (PDF 업로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과거에는 급여 담당자가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을 파일로 업로드 후, 뒤이어 개인이 PDF 자료를 업로드 했지만,
- 최근 대부분의 기부금(급여공제 기부금 포함)은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업무담당자"가 먼저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9) 일괄출력탭에서는 종전(현)근무지 자료를 기관별로 일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정산년월: 2022년 12월 연말정산 성명: 김윤지 주민번호: [REDACTED]

근무지/소득: [REDACTED] 비과세: [REDACTED] 소득감면: [REDACTED] 공제: [REDACTED] 세금/기부금: [REDACTED] 일괄출력

기관: [REDACTED] 직급순: [REDACTED] 일괄출력

2022년도 종전(현)근무지 자료

김화공업고등학교  
김윤지 : 교사/중고등학교교사/15호봉/5년

사건자번호	연월	금액	금액	연이율	상여율	비과세	그 밖의	연세중환상	공소기연환환	정당보통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타공	소득
		세액	공제			세액	비과세	감면액	소득세감면				(세액공제)	
202201		2,976,300	1,192,340	185,000	100,000	0	0	191,250	0	48,800	539,350	3		
202202		2,987,000	50,000	185,000	200,000	0	0	191,250	0	48,800	539,350	2		

## 2. 기타소득 확인 및 등록

기본메뉴 **업무메뉴**

국공립급여/연말정산

대상자관리

자료관리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기타소득등록**

기타공제등록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내역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등록

연말정산처리

### 기타소득등록

FAQ | 질의등록 | 연락처 | 도움말 | 절차차서 | 동영상

정산년월     성명   주민번호

기관

[ 김화공업고등학교 ] [ 특정직 / 국공립교원 / 교사 / 15호봉 / 5 ] [ 재직 ]

공무원구분	행정부국가공무원	급여관리구분	호봉제	최초임용일	1987.09.01	현재급임용일	2010.12.06
기관명	김화공업고등학교	급여직종	국공립교원	현근무년수 변경일	2011.01.01	현호봉임용일	2011.01.01
급여직업기관	강원도교육청	직급	중고등학교교사	자기근무년수변경일	2011.04.01	자기 승급일	2011.04.01

<input type="checkbox"/>	개인번호	근무지명	소득일자	소득사유	소득금액	비과세금액	조세조약감면액	비과세구분
<input type="checkbox"/>	K101604902		2022.05.05	방과후학교강사비	100,000	0	0	그밖의비과세
<input type="checkbox"/>	K101604902		2022.10.05	방과후학교강사비	100,000	0	0	그밖의비과세
<input type="checkbox"/>	K101604902		2022.11.05	방과후학교강사비	100,000	0	0	그밖의비과세
<input type="checkbox"/>	K101604902		2022.12.05	방과후학교강사비	100,000	0	0	그밖의비과세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기타소득등록]
- 2) 연말정산대상자의 연간 기타소득을 확인하고 추가한다.
- 3)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발생하는 소득(보충수업비, 특기적성비 등)을 입력하며, 월급여의 [급여외수당]으로 등록한 금액은 별도 등록없이 기타수당에 반영된다.
- 4) [급여외수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금액은 등록 시 소득일자, 소득금액을 입력한 후, 소득금액이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구분과 비과세 금액을 등록하여 저장한다.

기본메뉴 **업무메뉴**

국공립급여/연말정산

대상자관리

자료관리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기타소득등록**

기타공제등록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내역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등록

연말정산처리

### 기타소득등록

FAQ | 질의등록 | 연락처 | 도움말 | 절차차서 | 동영상

정산년월     성명   주민번호

기관

[ 김화공업고등학교 ] [ 특정직 / 국공립교원 / 교사 / 15호봉 / 5 ] [ 재직 ]

공무원구분	행정부국가공무원	급여관리구분	호봉제	최초임용일	1987.09.01	현재급임용일	2010.12.06
기관명	김화공업고등학교	급여직종	국공립교원	현근무년수 변경일	2011.01.01	현호봉임용일	2011.01.01
급여직업기관	강원도교육청	직급	중고등학교교사	자기근무년수변경일	2011.04.01	자기 승급일	2011.04.01

<input type="checkbox"/>	개인번호	근무지명	소득일자	소득사유	소득금액	비과세금액	조세조약감면액	비과세구분
<input type="checkbox"/>	K101604902		2022.05.05	방과후학교강사비	100,000	0	0	그밖의비과세
<input type="checkbox"/>	K101604902		2022.10.05	방과후학교강사비	100,000	0	0	그밖의비과세
<input type="checkbox"/>	K101604902		2022.11.05	방과후학교강사비	100,000	0	0	그밖의비과세
<input type="checkbox"/>	K101604902		2022.12.05	방과후학교강사비	100,000	0	0	그밖의비과세

**※ 기초자료생성시 급여외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집계**

- (2017년 이전) 기초자료생성 시 현근무지 급여외수당이 기타소득으로 집계
- (2018년 부터) 기초자료생성 시 전근무지, 현근무지 급여외수당이 기타소득으로 집계
  - ⇒ 전근무지 급여외수당은 현 근무지 소득으로 집계됨
  - ⇒ 전근무지 급여외수당이 전 근무지 소득으로 집계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에서 삭제 후, 종전(현)근무지 자료등록에서 전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 5) 업무담당자가 여러 명의 기타소득을 한꺼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반영처리를 할 수 있다.



- 6) [레이아웃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양식대로 작성한 후, 반드시 '텍스트(탭으로 분리)' 형식으로 저장하여 반영한다.
- 7) 개별로 등록한 내역 및 파일반영한 내역 개인별 확인이 가능하다.
- 8) 출력버튼으로 기관별 일괄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전근무지 급여외수당의 전근무지 소득 합산 방법

- (2018년 부터) 기초자료생성 시 전근무지, 현근무지 급여외수당이 기타소득으로 집계
  - ⇒ 전근무지 급여외수당은 현 근무지 소득으로 집계됨
  - ⇒ 전근무지 급여외수당이 전 근무지 소득으로 집계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에서 삭제 후, 종전(현)근무지 자료등록에서 전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야 함

1. 전근무지 급여 총액, 상여 총액 확인

- 1) 메뉴 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기타소득등록]
- 2) 전근무지 급여외수당이 등록된 대상자의 급여총액, 상여총액을 확인한다.

- 3) 전근무지의 급여외수당을 삭제한다.

## 2. 전근무지 급여 총액, 상여 총액 합산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정산년월 2022년 12월 연말정산 성명 김사태 주민번호 [REDACTED] 조회

급여총액 합산 상여총액 합산

※ 상여총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급여총액 합산	상여총액 합산	추가	저장	삭제
8,000,000	3,000,000	0	0	0
5,000,000	100,000	0	0	0
5,000,000	100,000	0	0	0
5,000,000	100,000	0	0	0

1) 메뉴 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2) 종전근무지의 급여총액, 상여총액에 [기타소득등록] 메뉴에서 확인한 급여총액, 상여총액을 합산해 입력한다.

$$\text{급여총액 } 8,000,000 + 200,000(\text{기타소득}) = 8,200,000(\text{입력})$$

$$\text{상여총액 } 3,000,000 + 200,000(\text{기타소득}) = 3,200,000(\text{입력})$$

기타소득의 급여구분 중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1,2, 연가보상비는 상여총액에 합산한다.

그 외의 기타소득 금액은 급여총액으로 합산한다.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정산년월 2022년 12월 연말정산 성명 김사태 주민번호 [REDACTED] 조회

급여총액 합산 급여총액 합산

※ 상여총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급여총액 합산	상여총액 합산	추가	저장	삭제
8,200,000	3,200,000	0	0	0
5,000,000	100,000	0	0	0
5,000,000	100,000	0	0	0
5,000,000	100,000	0	0	0

3) 합산한 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저장한다.

### 3. 기타 공제 확인 및 등록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기타공제등록]
- 2) 연말정산대상자의 연간 기타 공제를 확인하고 추가한다.
- 3)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발생한 공제(소득세, 건강보험소급 등)을 입력하며, 월급여의 [급여외공제]로 등록한 금액은 별도 등록없이 기타공제등록에 반영된다.
- 4) [급여외공제]로 등록하지 않은 금액은 등록 시 공제일자, 공제금액을 입력한다.

- 5) 업무담당자가 여러 명의 기타공제를 한꺼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반영처리를 할 수 있다.

- 6) [레이아웃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양식대로 작성한 후, 반드시 '텍스트(탭으로 분리)' 형식으로 저장하여 반영한다.
- 7) 개별로 등록한 내역 및 파일반영한 내역 개인별 확인이 가능하다.
- 8) 출력버튼으로 기관별 일괄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 4. 연말정산 공제자료등록 권한 부여

기본메뉴	업무메뉴	권한	메뉴	권한
국공립급여/기준관리	급여기준관리		기타소득등록	입력/수정/삭제 / 조회
	수당기준관리		GCCPAY실적이관	입력/수정/삭제 / 조회
	공제기준관리		연말정산세금계산	입력/수정/삭제 / 조회
	일할계산기준관리		세무서신고파일작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세금기준관리		세무서신고파일출력	입력/수정/삭제 / 조회
	사용기관관리		명절휴가비 대상자선정(개인)	입력/수정/삭제 / 조회
	사용기관정보관리		명절휴가비 대상자선정(전체)	입력/수정/삭제 / 조회
	관할기관관리		명절휴가비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급여작업권한관리		명절휴가비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급여작업권한관리		명절휴가비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사용기관제외수당관리		연가보상비대상자선정(개인)	입력/수정/삭제 / 조회
			연가보상비대상자선정(전체)	입력/수정/삭제 / 조회
			연가보상비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연가보상비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연가보상비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입력/수정/삭제 / 조회	
		기부금명세서/연금저축공제등록/월세명세서 등록	입력/수정/삭제 / 조회	
		정산공제자료 등록	입력/수정/삭제 / 조회	
		성과상여금자료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성과상여금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 조회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기준관리-사용기관관리-급여작업권한관리]
- 2) 개인이 정산공제자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여작업권한관리 메뉴에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3) 개인정보조회 항목의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기부금명세서 등록, 정산공제자료 등록 메뉴의 권한을 [입력/수정/삭제]로 설정하고 저장한다.  
 ※ 기부금명세서 권한 적용 시 연금저축 및 월세명세서도 같이 적용됨
- 4) 개인은 나의 업무에서 자신의 소득자료 확인, 공제자료 등록,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소득공제증명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월세명세서 등록 및 출력이 가능하고, 급여담당자는 각 개인이 입력한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5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정산대상자)

### 1. 근로소득 확인

사업자번호	근로 시작	근로 종료	근로소득	급여소득	비과세소득	그 밖의 비과세	조세공제액	공제기연(현) 소득세공제액	연장분할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타공 (사후연급)
			3,235,000	80,000	100,000	100,000	0	0	117,710	0	123,570	0
			3,522,520	380,000	100,000	150,000	0	0	117,710	0	144,000	0
			3,403,780	80,000	100,000	150,000	0	0	117,710	0	100,000	0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 2) 급여담당자가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작업을 한 경우, 2022년도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3) 급여담당자가 등록한 기타소득 자료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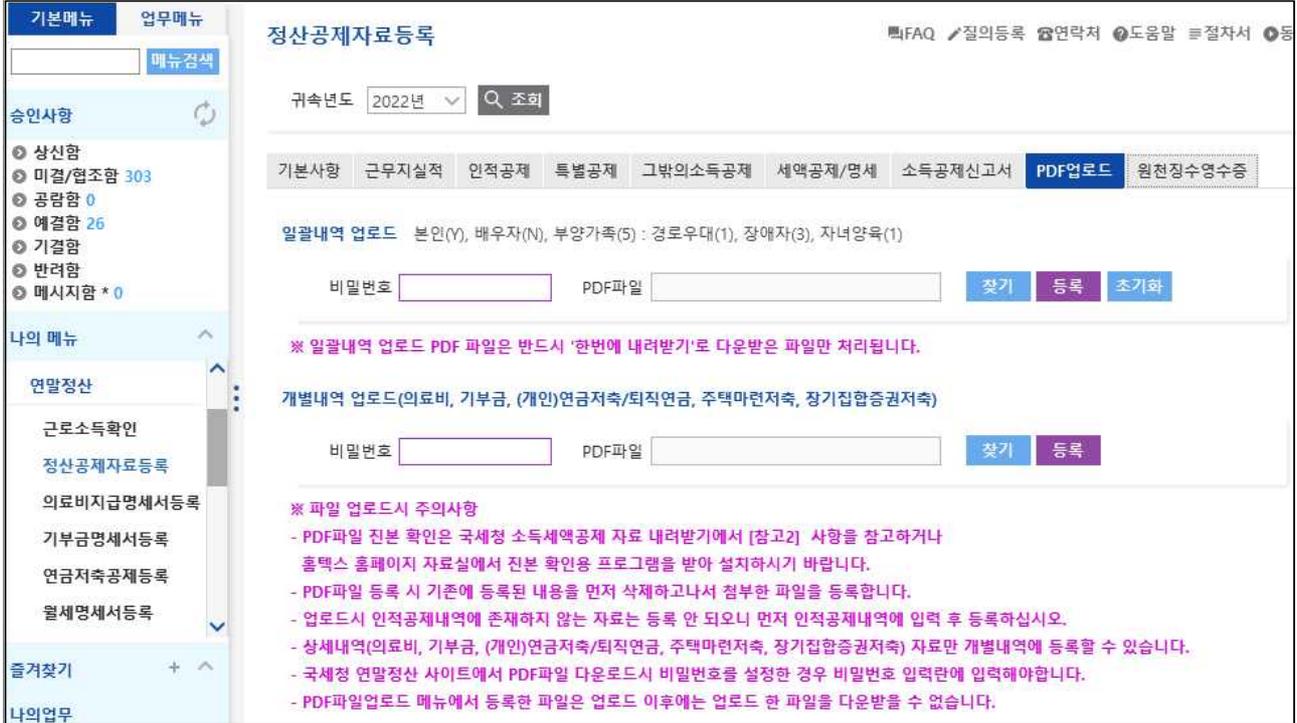
소득일자	소득금액	비과세금액	비과세구분	급여구분	소득사유
2022.12.29	30,000	0	그밖의비과세	SA	
합계	30,000	0			

#### ※ 근로소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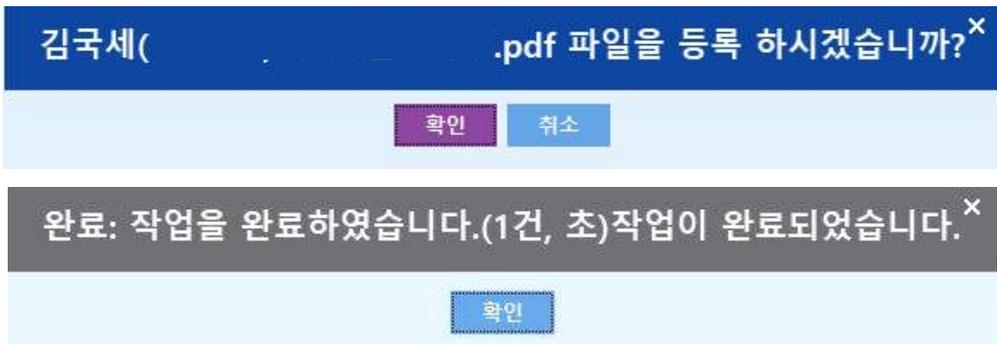
-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2. 정산공제자료 등록

### 1) (개인별) 국세청 전자파일 업로드(종이없는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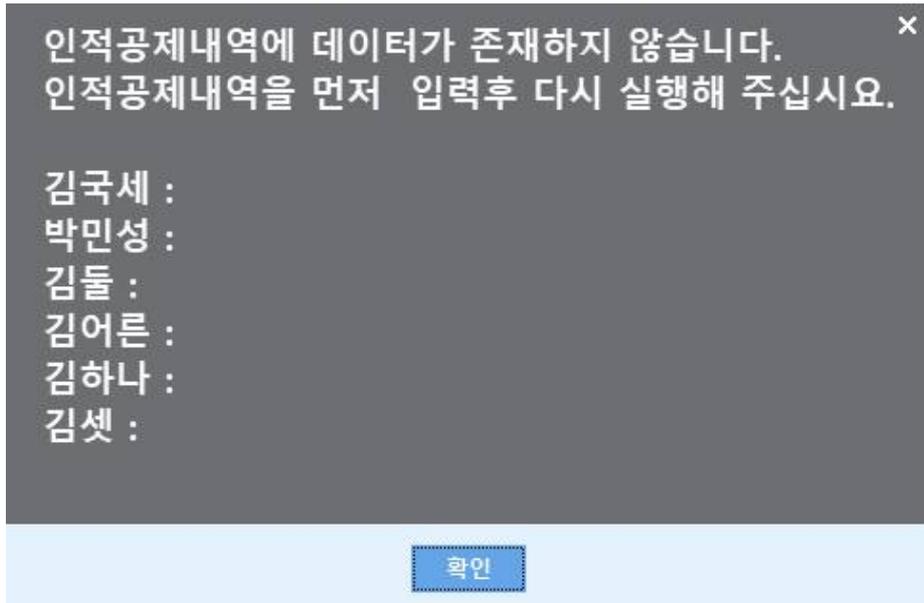
-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한다.
  - ※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기초자료생성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PDF 파일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 PDF파일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했을 경우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한다.
  - ※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업로드 가능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일괄내역 업로드에 업로드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세내역 업로드도 가능하다. 업로드 시 기관 담당자가 의료비 등을 일별로 확인가능.
- 업로드 이후 각각의 탭에서 업로드된 내역을 확인한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PDF로 업로드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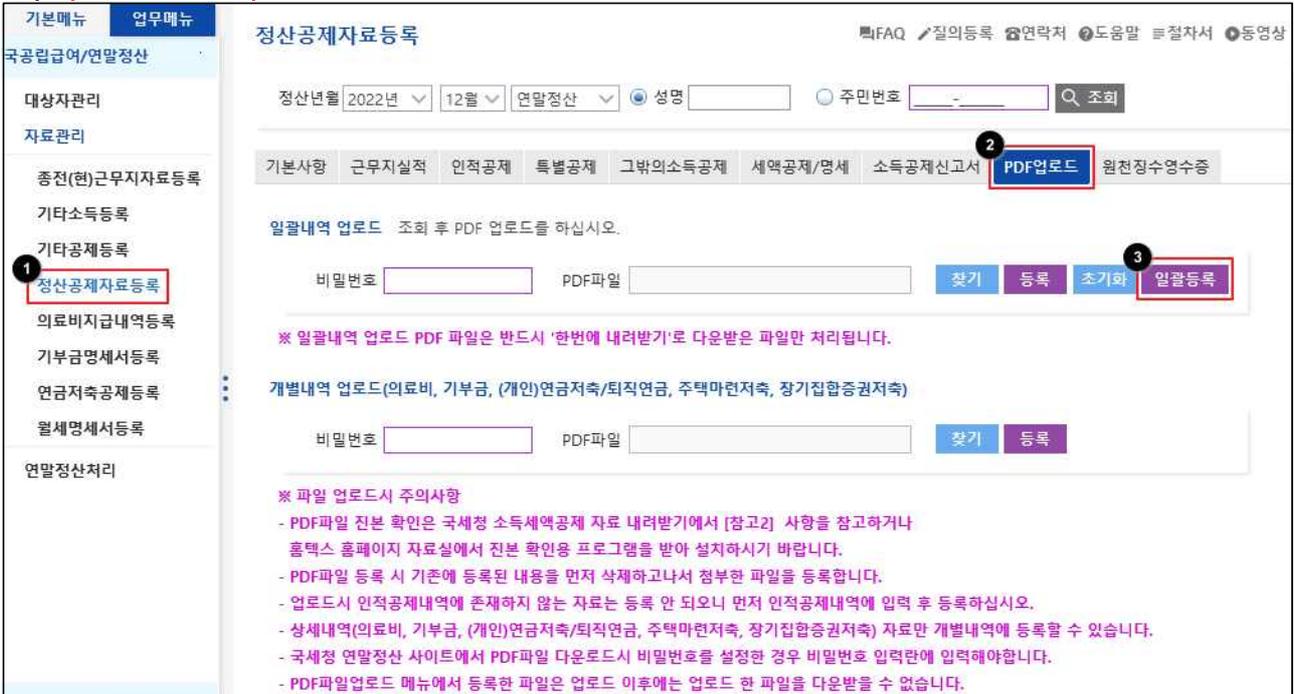
※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인적공제에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예) 배우자의 소득 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배우자 인적 공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 PDF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가 인적공제에 없을 경우



- 일괄내역 업로드 PDF 파일은 반드시 “한번에 내려받기”로 다운받은 파일만 처리됨

## 2) (급여 담당자) 국세청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파일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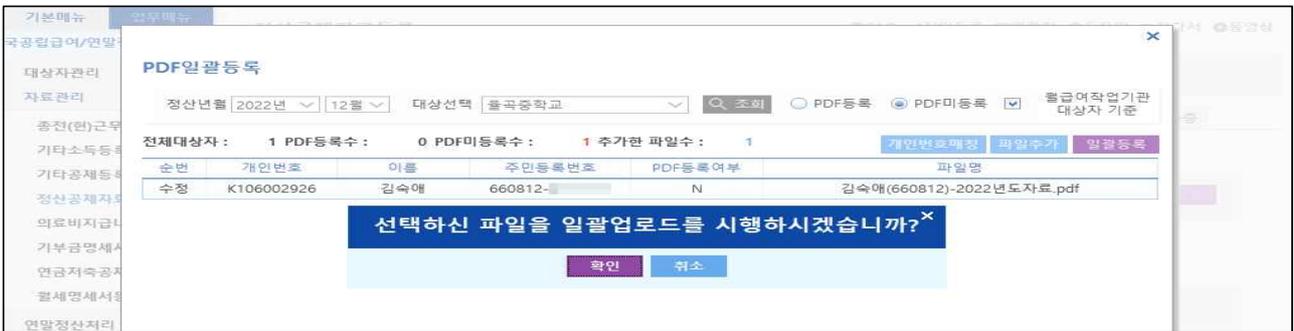
- 메뉴위치 : [국공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한다.
-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대상 기관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국세청 PDF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한다.
- ※ 국세청 PDF 파일명의 이름, 생년월일 정보를 기준으로 나이스 연말정산 대상자 정보를 매칭하므로 “이름(생년월일)-2022년도자료.pdf”로 파일명 형식을 맞춰야 한다.
- ※ 이름, 생년월일이 동일한 대상자는 개별로 등록해야 한다.
- ※ 일괄등록 파일은 한번에 50개씩 기관별로 등록할 수 있다.



- 대상자와 파일명이 올바르게 매칭되었는지 확인하고, 매칭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번호매칭 버튼을 클릭한다.
-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PDF 등록, 미등록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PDF 파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연말정산자료 일괄 등록은 급여 담당자 메뉴에서만 등록 가능하며, 개인은 나의 메뉴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자료만 등록할 수 있다.
- ※ PDF 등록여부가 Y라도 파일을 계속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가장 마지막에 등록한 PDF 파일로 연말정산자료가 변경된다.

※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접속, 로그인 후 연말정산 접속



2. 간소화 자료 조회 접속

3. “한번에 내려받기”로 PDF 다운로드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

---

**<참고1> PDF를 내려받기 할 때 [저장] 또는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하십시오.**  
 - [열기]로 먼저 열람하고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십시오. 위변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참고2> PDF를 열때 아크로벳리더를 사용하시고, PDF를 열 수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참고3> 미검증 표시**  
 [원인] 브라우저(크롬 등)로 연 경우, 아크로벳리더 이외 뷰어를 사용한 경우 등  
 [해결] 아래의 진본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단, [참고1]의 방법대로 저장한 PDF파일은 **미검증으로 보이더라도** 회사에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가능**

**<참고4> PDF 파일의 진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증서 검증 실패인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진본확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 [Windows용](#) / [Mac용](#) (리눅스는 지원하지 않음)  
 - 아크로벳리더를 먼저 설치한 후 진본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정상작동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해야 아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교육비/직업훈련비/교복구입비/학자금대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불카드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월세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 <input type="checkbox"/> 장기집합투자증권/벤처기업투자신탁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

※ 개인정보가 공개된 출력물의 보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피보험자 주민번호와 정치자금기부금 정보는 공개여부 선택과 관계없이 비공개됩니다.

\*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비공개시 출력 예 : 123456-\*\*\*\*\*)

내려받기
닫기

- 다운로드 시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이스에서 PDF 업로드 시 비밀번호를 입력 후 업로드 할 수 있다.

※ 국세청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세 PDF파일을 제공하지만, 나이스에서는 1개의 PDF 파일만 업로드하면 처리된다.

### 3) 전자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및 추가 등록

- ①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 ② 업무담당자가 등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 2022년도 정산공제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 ③ 기본사항탭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다.
  - **국적** : 본인의 국적을 등록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세팅되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 리스트에서 해당 국가를 찾아 등록한다.
  - **세대주** : 본인의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등록한다.
  - **근무기간** : 현근무지의 근무기간이 조회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작일은 2022.01.01일이 종료일은 2022.12.31일이 반영된다. 연중 신규임용자 및 퇴직자의 경우 **인사기록의 현기관입용일, 퇴직일**이 반영된다.
  - **기타소득**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소득으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기타공제**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공제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비과세총액** : 그밖의비과세(정액급식비 10만원, 육아휴직수당) 포함

정산공제자료등록

[FAQ](#) / [질의등록](#) / [연락처](#) / [도움말](#) / [절차서](#) / [동영상](#)

귀속년도 2022년 [ 🔍 조회 ]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 강원도교육청 ] [ 일반직 / 교육행정 / 6급 / 20호봉 / 10 ] [ 재직 ]

공무원구분	비공무원(사립교직원)	급여관리구분	호봉제	최초입용일	2010.08.02	현직급입용일	2018.01.01
기관명	강원도교육청	급여직종	지방일반직	현근무년수 변경일	2017.08.01	현호봉입용일	2017.08.01
급여작업기관	강원도교육청	직급	교육행정주사	차기근무년수변경일		차기 승급일	

국적	대한민국	세대주	세대주
총급여액 (비과세제외)	26,596,470	비과세총액	1,450,000

근무기간 [ 근무기간변경 ]

현 근무 시작일	2022.01.01	현 근무 종료일	2022.12.31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
현 근무 감면 시작일		현 근무 감면 종료일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00	과세금액	30,000	비과세금액	0
------	--------	------	--------	-------	---

기타공제

공제금액	0
------	---

저장

④ 근무지실적탭에서는 월급여에서 반영된 종전현근무지 소득 및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총액	0	상여총액	0	소득음선 행사이익	0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0										
비과세소득	0	급여총액 + 상여총액 + 소득음선행사이익 + 우리스주조합인출금 - 비과세소득												0			
건강보험	0	국민연금	0	고용보험	0												
공무원연금	0	군인연금	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0	별정우체국연금	0										
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농특세	0												
법정기부금	0	특례기부금	0	지정기부금 (중고단제외)	0	정치자금기부금	0										
<b>현근무지실적</b>																	
급여총액	27,386,470	상여총액	660,000	소득음선 행사이익	0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0										
비과세소득	1,450,000	급여총액 + 상여총액 + 소득음선행사이익 + 우리스주조합인출금 - 비과세소득												26,596,470			
건강보험	706,260	국민연금	0	고용보험	667,570												
공무원연금	0	군인연금	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0	별정우체국연금	0										
소득세	387,230	지방소득세	38,690	농특세	0												
법정기부금	0	특례기부금	0	지정기부금 (중고단제외)	3,000	정치자금기부금	10,000										

- 급여총액 : 2018년부터 그밖의비과세(정액급식비 10만원, 육아휴직수당) 포함

⑤ 인적공제탭에서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제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인적공제자료는 최초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시 월급여의 가족사항에서 반영되나, 이후 변동사항은 직접 수정해야 한다.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b>인적공제</b>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관계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자	자녀세액	출산일양	출산양분코드	장애인	장애인구분코드	건강	고용	보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 자녀	고둘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 자녀	고철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input type="checkbox"/>	직계비속 자녀	고영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	0								
<b>합계</b>												706,260	667,570								
												6	0	0	1	1	0	3			

※ 기본공제 :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만 60세이상 만 20세이하), 직계비속(만 20세이하, 배우자 그밖의 부양가족은 소득 500만원이하)  
 ※ 건강, 고용등 값에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경우 0 으로 수정 하십시오.  
 ※ 국세징 PDF 파일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각 항목의 아래칸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⑥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 [인적공제추가] 버튼으로 작업하고, 필요 시 개인별로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 ⑦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본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 ⑧ 인적공제사항에는 소득공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 각 가족별 소득공제항목이 표기된다.

인적공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기부금	
				2021년		2022년			
				전체	전통시장	전체	전통시장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관계		1~6월	7~12월					
<input type="checkbox"/>	본인	최철남	12,000	89,000	1,200,000	200,000	1,800,000	3,000,000	
<input type="checkbox"/>	소득자의직계존속	장장모	0	0	600,000	400,000	800,000	200,000	
<input type="checkbox"/>	소득자의직계존속	홍장인	0	0	0	0	0	0	
<input type="checkbox"/>	소득자의직계존속	고부친	0	0	0	0	0	0	
	합계		12,000	89,000	1,800,000	600,000	2,600,000	3,200,000	

※ 기본공제 :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만 60세이상 만 20세이하), 직계비속(만 20세이하, 배우자 그밖의 부양가족은 소득 500만원이하)  
 ※ 건강, 고용등 값에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경우 0 으로 수정 하십시오.  
 ※ 국세청 PDF 파일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각 항목의 아래칸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안내사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변경 시 2022년 전체사용분 금액도 변경해야 한다.
- ※ 상단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금액, 하단에는 기타 금액을 입력한다.

**※ 2022년 변경 사항**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의 10% (연간 100만원 한도)
  -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 2022년 전통시장 사용 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 금액 중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공제한도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은 공제 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자(1952.12.31.이전 출생자), 자녀세액, 출산·입양, 장애인, 장애인구분코드를 선택한다.
- 보험료 : 부양가족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지출 금액이 표기된다.
- 의료비, 교육비 : 부양가족별 의료비, 교육비 지출 금액이 표기된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등 : 부양가족별 각각의 내역이 표기된다.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
- 기부금 : 부양가족별 기부금 지출금액을 등록한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 PDF에도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지만, 나이스에서는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된다.

**※ 자녀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세금을 환급받고, 자녀장려금 수령 등을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할 경우, 인적공제의 자녀세액 체크를 해제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할 수 있다.

⑨ 특별공제 탭에서는 주택자금 및 기부금(이월분)을 등록한다.

**특별공제**

주택자금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5,321,230	거주자 (G)	0
주택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0	15년~29년	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기타 대출		0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523,000
				그밖의 대출	6,000,000
		10~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0	

※ (G) 항목은 월세명세서등록-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탭]에서 입력하십시오.

기부금	2013년 이전 이월금(소득공제)	법정기부금	0	2014년 이후 이월금(세액공제)	법정기부금	6,550,0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300,00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0

※ 기부금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소득공제신고서 확인 시 참조하십시오.  
 ※ 법정기부금 ->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주택자금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1년 이전) : 대출기간에 따라 입력한다.  
 ※ 공제 한도 : 15년 미만(600만원), 15~29년(1,000만원), 30년 이상(1,500만원)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2년 이후)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5년 이후) : 2015년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 기부금이월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 이월금에 대하여 입력한다.

※ 이월금이 아닌 2022년 귀속분은 세액공제에 입력한다.

**기부금 이월금**

기부금코드	기부년도	③기부금액	⑥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이월금(③-⑥)
법정기부금(10)	2021	5,000,000	0	5,000,000
지정기부금(40)	2021	300,000	0	300,000
법정기부금(10)	2019	2,050,000	500,000	1,550,000

※ 기부금 이월금 등록 방법

- 17년 귀속분부터 기부금조정명세서 관리 목적으로 입력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 [이월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생성되며,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이월금을 등록 후 저장한다. 입력된 내용은 기부금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이월금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월한 금액을 확인 가능

⑩ 그 밖의 소득공제 탭에서는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기타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산공제자료등록**

귀속년도: 2022년

기본사항 | 근무지실적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소득공제** | 세액공제/명세 | 소득공제신고서 | PDF업로드 | 원천징수영수증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F)	0	소기업공제부금	1,500,000
주택마련저축 (F)			
주택청약저축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0		
투자조합 출자 등 (F)			
2020년 출자·투자분	벤처	0	조합1 0 조합2 0
2021년 출자·투자분	벤처	0	조합1 0 조합2 0
2022년 출자·투자분	벤처	0	조합1 0 조합2 0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0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0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E)	0	도서·공연 사용액 (E)	0
전통시장 사용액 (E)	0	대중교통 이용액 (E)	101,000
연간 사용금액 전체 소비증가분(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710,000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2,570,00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F)	0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F)	0

※ 총금액(21)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상 인적공제 항목 도서·공연사용분은 0원 처리되며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각각 합산되어 공제됩니다.

※ (E) 항목은 인적공제[탭] 또는 PDF업로드[탭], (F) 항목은 연금저축지급내역등록에서 입력하십시오.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분) 납입액이 표기된다.
- 소기업공제부금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표기된다.
- 주택마련저축 : 아래 저축별로 납입한 금액이 표기된다.
  -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라 납입. 연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 법률 제7030호에 따라 납입. 월 15만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입력하였지만 소득공제금액 반영되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투자조합출자 : 거주자/개인에 따라 2018년도 이후 출자·투자분이 표기된다.
  - 10%에 입력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총 금액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표기된다.
  - 1,500만원 이하는 100%, 2018년부터는 3천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에 표기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 인적공제에 등록된 금액이 항목별로 합산되어 조회 됨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적립식 펀드 납입 금액 입력(600만원 한도, 40%공제)

① 세액공제/명세 탭에서는 세액공제 내역을 등록하고, 세액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연금저축(F) - 연금저축지급내역등록에서 등록한 내용이 표기됨
- 연금저축 : 2001.1.1. 이후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표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 기여형(DC형), 개인형(IRP)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
-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E) - 인적공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장애인 보험료 포함
-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 그 밖의 공제대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나누어 표기됨
- ※ 2018년도부터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내역등록 메뉴에서만 입력
- 교육비 : 본인, 대학, 장애인, 취학전아동+유초중고으로 나누어 표기됨
- ※ 교복구입비(공제대상 한도액: 학생1인당 연50만원)
- 기부금(H) - 기부금명세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 2016~2018년 이월 기부금 :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공제
- ※ 2019~2020년 이월 기부금 :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
- ※ 2021년 ~ 이월 기부금 :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5% 공제
- 월세액(G) : 월세명세서에서 등록된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됨
- 조특법세액감면(제30조) :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감면(탭)에 등록된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액 금액 표기

- 조세조약세액감면(원어민교사) :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 감면(탭)에 등록된 조세 조약상 감면급여액 금액 표기

- 소득세법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PDF상 해당 금액 표기

⑫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1)] <개정안2022. 3. 18. >' page. The main content is the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It includes a header with the taxpayer's name (최철남) and ID (221-83-00032), and a table for '인적공제 항목' and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구분	성명	소득공제 구분	가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최철남	본인	120%	보통료		의료비	
인적공제	최철남	배우자	100%	장제비		교육비	

⑬ 결과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확인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원천징수영수증' (Source Deduction Receipt) page. It includes a header with the taxpayer's name (최철남) and ID (221-83-00032), and a table for '정수 의무자' (Source Deduction Obligor) and '정수 소득자' (Source Deduction Recipient).

정수 의무자		정수 소득자	
구분	성명	구분	성명
(1) 법인명 (상호)	강원도교육청	(7)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21-83-00032
(3-1) 사업자등록번호	221-83-00032	(4) 주민등록번호	221-83-00032
(3-2) 사업자등록 과세자 여부	여1/부2	(5) 소재지(주소)	강원 강릉시 가락로 10 (교동)

### 3.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2) 의료비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에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한다.
  - ※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3)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에 대해서는 인별로 합계 금액을 기재, 의료증비코드“1”로 함(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의료비 항목 작성 방법**

- 의료비(난임시술비 등 포함) 관련 항목은 의료비지급내역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인적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 4. 기부금명세서 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귀속년도: 2022년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 기부금 구분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정산공제자료등록 - 특별공제를 참조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지급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장려금	공제대상금액	기부자관계
	대한적십자사	법정기부금(10)	1	2,000,000	0	2,000,000	본인
합계(기부금명세서등록금액)			1	2,000,000	0	2,000,000	

※ 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하이픈(-)없이 숫자만 입력 해야하며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는 인적공제[합]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기부금명세서탭]
- 2) 기부금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해당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금구분,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저장한다.
- 4)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자동으로 작성된다.
- 5)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 2018년도부터 기부금 항목 작성 방법

- 기부금(급여공제 기부금 포함) 관련 항목은 기부금명세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인적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 5. 연금저축공제 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귀속년도 2022년 [조회] [출력]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추가,저장,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투자년도	투자구분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새마을금고 전체		3,100,000	465,000		
<input type="checkbox"/>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주)		2,400,000	960,000		
합계(연금정산등록금액)			5,500,000	1,425,00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에서 투자구분이 조합2인 경우 공제금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
- 2) 연금저축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저축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 3) 해당 연금저축의 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증권번호), 불입금액을 차례로 입력한다.
- 4)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저축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 2018년도부터 연금저축공제 항목 작성 방법**

- 근로자퇴직연금, 개인연금, 청약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등 연금저축 관련 항목은 연금저축공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 6. 월세명세서등록

-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
-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입력 여부	임대인 성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 적(m²)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대인 계약기 시작일
<input type="checkbox"/>	집주인	12345678915	아파트	84	주소	2022.0

- 4)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래 탭에 내용을 작성한다.



입력 여부	대주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시작일	종료일	계	원리금	이자	공제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물주		2022.01.01	2022.12.31	3.2	51,600,000	50,000,000	1,600,000	20,640,000
합계(공제금액)								20,640,000	

입대인	임대인 성명	주민(사업자)번호	주택유형	주택면적(m²)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전세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임대인		단독주택	52	주소주소	2022.01.01	2022.12.31	50,000,000

- 5)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 6)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는다.
- 7) 공제금액은 월세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 2018년도부터 월세명세서 항목 작성 방법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임차금 관련 항목은 월세명세서등록 메뉴에서만 작성
- 세액공제/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 6 개인별 공제자료 확인 및 검토

### 1. 연말정산 공제자료 권한 회수

기본메뉴	업무메뉴	개인별공제관리(기타(학교회계))	입력/수정/삭제	조회	개인별공제관리	입력/수정/삭제	조회	기타소득등록	입력/수정/삭제	조회	
국공립급여/기준관리		개인별공제관리	입력/수정/삭제	조회	GCCPAY실적이관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말정산세금계산	입력/수정/삭제	조회	
급여기준관리		개인별공제관리(세금예외)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말정산세금계산	입력/수정/삭제	조회	세무서신고파일작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수당기준관리		개인별세금적용비율	입력/수정/삭제	조회	세무서신고파일출력	입력/수정/삭제	조회	명절휴가비 대상자선택(개인)	입력/수정/삭제	조회	
공제기준관리		연금보험공제관리	입력/수정/삭제	조회	명절휴가비 대상자선택(전체)	입력/수정/삭제	조회	명절휴가비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일할계산기준관리		채권압류공제관리	입력/수정/삭제	조회	명절휴가비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명절휴가비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세금기준관리		외부공제외회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대상자선택(개인)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대상자선택(전체)	입력/수정/삭제	조회	
사용기관관리		기초자료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사용기관정보관리		대상자선택(개인)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관할기관관리		대상자선택(전체)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대상자선택(개인)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대상자선택(전체)	입력/수정/삭제	조회	
급여작업권한관리		본봉수당계산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급여작업권한관리		공제계산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사용기관제외수당관리		세금계산	입력/수정/삭제	조회	연가보상비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입력/수정/삭제	조회	
		지급액계산	입력/수정/삭제	조회	개인정보조회	기부금명세서/연금저축공제등록/월세명세서 등록	입력/수정/삭제	조회	정산공제자료 등록	입력/수정/삭제	조회
		자료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자료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지로파일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성과상여금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월급여일괄작업	입력/수정/삭제	조회		성과상여금실적이력생성	입력/수정/삭제	조회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기준관리-사용기관관리-급여작업권한관리]
- 2) 개인의 정산공제자료 등록완료 후, 더 이상 자료를 수정할 수 없도록 권한을 회수한 후, 제출된 서류와 입력된 내용을 비교·확인하여 연말정산 세금계산을 한다.

## 2. 정산공제자료 확인

**기본메뉴**    **업무메뉴**

국공립급여/연말정산

대상자관리

자료관리

중전(현)근무지자료등록

기타소득등록

기타공제등록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내역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등록

연말정산처리

최근 사용 메뉴

### 정산공제자료등록

[FAQ](#)   [질의등록](#)   [연락처](#)   [도움말](#)   [절차서](#)   [동영상](#)

정산년월 [2022년] [12월] [연말정산]     성명 [김운지]     주민번호 [ ]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역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 김화공업고등학교 ]    [ 특정직 / 국공립교원 / 교사 / 15호봉 / 5 ]    [ 재직 ]

공무원구분	행정부국가공무원	급여관리구분	호봉제	최초임용일	1987.09.01	현직급임용일	2010.12.06
기관명	김화공업고등학교	급여직종	국공립교원	현근무년수 변경일	2011.01.01	현호봉임용일	2011.01.01
급여작업기관	강원도교육청	직급	중고등학교교사	차기근무년수변경일	2011.04.01	차기 승급일	2011.04.01

국적	대한민국	세대주	세대주
총급여액 (비과세제외)	42,509,370	비과세총액	4,155,000

**근무기간**   

현 근무 시작일	2022.01.01	현 근무 종료일	2022.12.31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
현 근무 감면 시작일		현 근무 감면 종료일			

**기타소득**

소득금액	400,000	과세금액	400,000	비과세금액	0
------	---------	------	---------	-------	---

**기타공제**

공제금액	215,000
------	---------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정산공제자료등록]
- 2) 급여업무담당자는 개인이 나의 업무에 등록하여 반영된 정산공제자료와 직접 제출한 소득 공제명세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확정한다.
- 3)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일괄출력탭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내역을 전체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 51 -

### 3. 의료비지급내역 등록

**의료비지급내역등록**

정산년월: 2022년 12월 연말정산 | 기관: 고등학교 간동고등학교 | 직급순 | 조회 | 출력 | 실손의료비 포함여부

순번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의료비실지출금액 (정산공제등록금액)	의료비세액공제금액
8	간동고등학교	나교사		교사	0	0
9	간동고등학교	홍지도		교사	0	0
10	간동고등학교	박생활		교사	0	0
11	간동고등학교	김철수		교원	0	0
12	간동고등학교	스교사		교사	0	0
13	간동고등학교	이지은		교사	21,608,320	0
14	간동고등학교	들팍육아휴직011		5급	0	0
15	간동고등학교	이교육		5급	0	0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의료증빙코드	지급건수	지급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등 해당여부	의료비 상세구분
<input type="checkbox"/> 101-14-58118	광열*****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1	595,000	고철수	050101-3234567	X	그외
<input type="checkbox"/> 101-14-58118	광열*****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1	255,000	고틀리	170101-4234567	X	그외
<input type="checkbox"/> 101-14-58118	광열*****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1	470,000	고부진	420101-1234567	O	장애
<input type="checkbox"/> 101-14-58118	광열*****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1	160,000	이지은	750101-1234567	O	본인
<input type="checkbox"/> 105-82-11133	국민*****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1	75,200	고영수	000101-3234567	X	그외
<input type="checkbox"/> 117-96-04383	Ar*****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	1	8,500	고철수	050101-3234567	X	그외
합계(실제지출금액, 실손보험금제외)			26	17,909,320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의료비지급내역]
- 2) 근로자가 나의업무에서 의료비지급내역을 등록한 경우, 그 내역이 그대로 조회되거나 실제 증빙서류와 확인하여 사용한다.
- 3) 나의 업무 및 정산공제자료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의료비지출금액이 표시되며, 해당 데이터를 클릭하면 하단에 명세서 상세 세부내역이 조회된다.
- 4) 의료비지급내역 등록 및 수정은 해당 버튼으로 나의 업무에서 등록한 방법대로 작업할 수 있다.
- 5) 업무담당자가 여러명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반영처리를 할 수 있다.
- 6) [레이아웃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양식대로 작성한 후, 반드시 '텍스트(탭으로 분리)' 형식으로 저장하여 반영한다.
- 7) 개별로 등록한 내역 및 파일 반영한 내역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버튼으로 기관별 일괄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 4. 기부금명세서 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FAQ](#) / [질의등록](#) / [연락처](#) / [도움말](#) / [절차서](#) / [동영상](#)

정산년월 2022년 | 12월 | 연말정산 | 기관 고등학교 간동고등학교 | 직급순 | 조회 출력 파일반영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기부금액 (기부금명세서)	이월금액 (특별공제)	소득공제금액	세액공제금액
간동고등학교	간교장	■■■■■■■■■■	중고등학교장	0	0	0	0
간동고등학교	등교감	■■■■■■■■■■	중고등학교교감	0	0	0	0
간동고등학교	고수석	■■■■■■■■■■	중고등학교수석교	0	120,000	0	0
간동고등학교	스교사	■■■■■■■■■■	중고등학교교사	0	0	0	0
간동고등학교	이지은	■■■■■■■■■■	중고등학교교사	0	5,985,000	0	0
간동고등학교	나교사	■■■■■■■■■■	중고등학교교사	0	0	0	0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조정명세서

※ 기부금 구분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정산공제자료등록 - 특별공제를 참조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저장 삭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지급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장려금	공제대상금액	기부자관계
<input type="checkbox"/>	108-82-05789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	지정기부금(40)	1	210,000	0	210,000	직계존속
<input type="checkbox"/>	116-82-14426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자-	법정기부금(10)	1	50,000	0	50,000	본인
<input type="checkbox"/>	214-82-08077	재단법인 대한법률 법률	지정기부금(40)	1	1,200,000	0	1,200,000	직계비속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국)	정치자금(국세청자료)	정치자금(20)	1	1,000	0	1,000	본인
합계(기부금명세서등록금액)					4	1,461,000	0	1,461,000

※ 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하이픈(-)없이 숫자만 입력해야 하며, 기부자주민등록번호는 인적공제(택1)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기부금명세서등록]
- 2) 근로자가 나의업무에서 기부금명세서를 등록한 경우, 그 내역이 그대로 조회되거나 실제 증빙서류와 확인하여 사용한다.
- 3) 나의 업무 및 정산공제자료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기부금총액, 기부금공제금액이 표시되며, 해당 데이터를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 세부내역이 조회된다.
- 4) 기부금명세서는 추가 및 수정 버튼으로 내역을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  
 ※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기부금도 반드시 기부금명세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 5) 업무담당자가 여러 명의 기부금명세서를 한꺼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반영 처리를 할 수 있다.
- 6) [레이아웃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양식대로 작성한 후, 반드시 '텍스트(탭으로 분리)' 형식으로 저장하여 반영한다.
- 7) 개별로 등록한 내역 및 파일반영한 내역은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버튼으로 기관별 일괄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 8)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는 당년도 기부금 내역과 [정산공제자료등록] - [특별공제택] 기부금이월금 입력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기부금조정명세서의 경우 세금계산 완료하면 자동 완성 됨

- 53 -

## 5. 연금저축지급내역 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FAQ](#) / [질의등록](#) / [연락처](#) / [도움말](#) / [절차서](#) / [동영상](#)

정산년월: 2022년 12월 연말정산 기관: 고등학교 간동고등학교 직급순

순번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지출금액 (정산공제등록금액)	공제금액 (원천징수영수증)
9	간동고등학교	홍지도		교사	0	0
10	간동고등학교	박생활		교사	0	0
11	간동고등학교	김철수		교원	0	0
12	간동고등학교	스교사		교사	0	0
13	간동고등학교	이지은		교사	35,184,905	0
14	간동고등학교	들째육아휴직011		5급	0	0
15	간동고등학교	이교육		5급	0	0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투자년도	투자구분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식회사 하나은행		1,000,000		
<input type="checkbox"/>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식회사 하나은행		3,750,000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	신한금융투자 (주)		2,760,000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	신한금융투자 (주)		3,300,000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신용협동조합 전체		4,200,000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우리투자증권 (주)		180,000		
<input type="checkbox"/>	청약저축	(주) 국민은행		1,200,000		
합계(연금정산등록금액)				28,684,905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에서 투자구분이 조합2인 경우 공제금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연금저축지급내역 등록]
- 2) 근로자가 나의업무에서 연금저축지급내역을 등록한 경우, 그 내역이 그대로 조회되니 실제 증빙서류와 확인하여 사용한다.
- 3) 나의 업무 및 정산공제자료에 등록한 연금저축지출금액, 공제금액이 표시되며 해당 데이터를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 세부내역이 조회된다.
- 4) 연금저축지급내역 등록 및 수정은 해당 버튼으로 나의 업무에서 등록한 방법대로 작업할 수 있다.
- 5) 업무담당자가 여러명의 연금저축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 반영처리를 할 수 있다.
- 6) [레이아웃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 양식대로 작성한 후, 반드시 '텍스트(탭으로 분리)' 형식으로 저장하여 반영한다.
- 7) 개별로 등록한 내역 및 파일반영한 내역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버튼으로 기관별 일괄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지급내역 관련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지급내역 등록 시, 상단에 조회되는 지출금액, 공제금액은 지급명세서 등록 금액이 아니므로 하단의 지급명세서 합산금액이 더 클 수 있음
- 의료비명세서 : 정산공제자료의 인적공제에 등록된 의료비 합산 금액
- 기부금명세서 : 정산공제자료의 인적공제에 등록된 기부금 합산 금액
- 연금저축명세서 : 정산공제자료의 특별공제, 기타공제에 등록된 연금저축 합산 금액

## 6. 월세명세서등록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자료관리-월세명세서등록]
-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순번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월세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9	간동고등학교	홍지도	[REDACTED]	교사	0	0	0	0
10	간동고등학교	박상환	[REDACTED]	교사	0	0	0	0
11	간동고등학교	김철수	[REDACTED]	교원	0	0	0	0
12	간동고등학교	스교사	[REDACTED]	교사	0	0	0	0
13	간동고등학교	이지은	[REDACTED]	교사	12,000,000	0	0	0

- 4)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래 탭에 내용을 작성한다.

순번	부서	성명	주민번호	직급	월세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133	기획관리국 시설과	김환	[REDACTED]	교원	0	0	0	0
134	기획관리국 시설과	최계약	[REDACTED]	교감	0	0	0	0
135	기획관리국 시설과	이일반3	[REDACTED]	3급	0	0	0	0
136	기획관리국 시설과	최철남	[REDACTED]	6급	0	0	51,600,000	0
137	기획관리국 시설과	이연저	[REDACTED]	6급	0	0	0	0

- 5)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 6)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는다.
- 7) 공제금액은 월세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 7 연말정산 처리

## 1. 연말정산 세금계산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연말정산처리-연말정산세금계산]
- 2) 연말정산 업무담당자가 소속 기관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내역 및 증빙 서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을 하여 정산 결과를 확인한다.
- 3) 정산년월을 바르게 입력한 후, 전체기관, 기관, 부서, 개인별 세금계산 작업을 한다. 선택기관으로 최소 1번이상은 세금계산 처리를 해야 **연말정산 마감**이 가능하니, **학교 및 단위 기관에서는 [부서]로 작업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 4) 세금계산 작업은 처리건수에 따라 작업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작업결과는 화면 하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2. 연말정산 결과 조회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연말정산처리-부서별결과세부내역 조회]
- 2) 연말정산 결과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조회 및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표준세액공제 자동 계산

표준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으로 주로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 (2017년 귀속 이전) 근로자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인적공제탭에 본인만 추가한 후, 아래 원천징수영수증 표시된 항목[(33)보험료, (34)주택자금, (35)기부금(이월분), (60)보험료, (61)의료비, (62)교육비, (63-나)법정기부금, (63-라)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63-마)지정기부금(종교단체)], (69)월세액 은 0원으로 입력하여 계산하면 표준세액공제로 계산됨
- (2017년 귀속 이후) 표준세액공제 항목이 입력된 경우라도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 적용토록 개선

∴ 개선 결과에 따라, 인적공제탭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입력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 (33)보험료에서 조회가 안되는 현상은 (66)표준세액공제에 13만원이 적용되었다면 표준세액공제로 계산되었음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3. 세무서 신고파일 작성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연말정산처리-세무서신고파일 작성]
- 2) 연말정산 작업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각종 파일 및 서식을 생성할 수 있다.
- 3) 신고일자는 신고파일 생성 작업을 하는 일자가 자동 세팅된다.
- 4) 신고파일은 온라인과 배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 처리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끊기는 경우, 배치로 처리를 시도해본다.
  - 가능한 단위기관일 경우 신고파일생성(온라인)으로 작업 요망
- 5) 정산년월, 정산구분, 회계구분을 설정한다. 정산구분은 연말정산으로, 회계구분은 전체, 교특회계, 학교회계로 구분된다. 정산구분과 회계구분으로 신고파일이 생성되는 대상자가 달라지므로 용도에 맞게 설정하여 작업한다.
- 6) 환급금계좌구분은 환급금 지로파일 생성시 사용되며, 급여계좌와 제외수당계좌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 7) 신고파일 생성 시, 연말정산담당자의 홈텍스ID, 부서, 성명, 전화번호를 등록한 후, 생성할 파일을 선택하여 생성한다. 홈텍스 ID 등의 정보는 신고파일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등록되지 않으면 신고파일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여 신고할 수 없다.
- 8)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파일은 2종류로, 근로소득(연금저축, 월세)은 연말정산 지급조서로 연금저축명세서가 포함되어 생성되며, 의료비명세서도 각각 파일로 생성하여 신고한다.
- 9) 신고파일을 생성하면 파일 생성 정보가 화면 하단에 표시되며, 파일생성여부가 'Y'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 10) 제출집계표 버튼은 세무서에 신고할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생성한다.
- 11) 환급(소득세), 환급(주민세)는 세무서에 제출할 환급신청서를 조회할 수 있다.
- 12) 지로파일 버튼은 환급금지로파일을 생성하는 버튼이다. 지로파일을 생성하면, 파일

생성 정보가 화면 하단에 표시되며, 파일생성여부가 'Y'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 세액공제 적용 순서**

세액감면→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차입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 ■ 홈텍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예시

※ 국세청(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자료 270p 참조

①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①한다. [신청/제출②]을 선택하고 [신청/제출] 화면에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③]를 선택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로그인' (Login)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1'. Below the navigation bar, the '신청/제출' (Apply/Submit) menu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2'. In the main content area, the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Income Statement for Employees/Businesses)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3'. The page also displays various service notices and a sidebar with '신청/제출 이용시간' (Application/Submission Hours) and '신청/제출 이용절차' (Application/Submission Process).

②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④]를 선택한다.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이 서비스는 지급명세서를 화면에서 직접 작성·제출하거나  
 상용(자체)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전산매체 파일을 변환·전송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Income Statement Submission' page. On the left, there are buttons for '수정·기한 후 제출' (Modify/Submit after deadline), '전기 제출' (Advance submission), and '수시 제출' (On-demand submission). The main content area lists various income statement types with '바로가기 >' (Go) buttons. The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Income Statement for Employees)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4'. To the right, there are informational boxes about submission methods and deadlines. At the bottom, there are more options for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Income Statement for Business Income) and '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Income Statement for Religious Income).

**TIP**

③ [제출방식선택]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5)]나 [변환제출방식(6)]을 선택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 나이스 사용자는 [변환제출방식(6)]을 선택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 STEP 1.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 단계입니다.
- 제출기한이 있는 과세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과세자료제출 요약정보는 [STEP2.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식 선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방식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직접작성제출방식

1. 기본사항 입력 > 2. 상세내역 입력 > 3. 오류검증 > 4. 과세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6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1. 회계프로그램변환 과세자료 작성 > 2. 프로그램실행 후 오류 검증 > 3. 과세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 원천징수의무자수는 한 파일에 500개로 제한되며, 500개 초과분은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 오류건수가 1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더이상 오류 검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변환제출방식의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

- ① [Step1. 과세자료제출]의 [01.전자파일변환]에서 오류검증을 진행 한다.
- 민원종류와 과세년월을 확인하고 제출할 전산매체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한다.
  - 파일형식검증을 진행하고 [검증결과확인]을 클릭한다

전산매체 제출

Step 1. 과세자료제출

Step 2. 제출내역

01.전자파일변환

02.변환결과조회

03.전자파일제출

+ 전자파일변환

도움말

제출자번호: 940216-\*\*\*\*\*      제출자명: [REDACTED]

\* 민원종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민원종류검색: [REDACTED]

\* 과세년월: 2022 년      \* 제출구분: 신규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별 최종제출 자료만 유효 합니다.

+ 변환대상파일선택

> 선택한 파일내역

NO	전자파일명	파일크기
1	[REDACTED]	859,344 Byte

찾아보기

**TIP** 

- 형식검증이 오류 없이 끝나면 ‘오류 납세자수’가 ‘0’이 된다. ‘0’이 아닌 경우 숫자를 클릭하고 해당 오류를 확인한다. 오류가 없으면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를 확인하고 [내용검증하기]를 클릭한다.
  - 내용검증 오류가 없다면 ‘정상납세자수’의 숫자를 클릭해서 [02. 변환결과조회]의 [정상 자료] 탭으로 이동해서 제출한 파일의 상세항목(제출요약 및 소득자 리스트)을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 ② [Step1. 과세자료제출]의 [03.전자파일변환]에서 제출할 지급명세서의 제출 요약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한다
  - ③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일괄제출)’화면이 자동 팝업으로 보인다. [인쇄하기] 버튼 클릭 시 접수증 인쇄할 수 있다

## 4. 정산세금관리

공무원구분	행정부국가공무원	급여관리구분	호봉제	최초임용일	1987.09.01	현직임용일	2010.12.06
기관명	김화공업고등학교	급여직종	국공립교원	현근무년수 변경일	2011.01.01	현호봉임용일	2011.01.01
급여작업기관	강원도교육청	직급	중고등학교교사	차기근무년수변경일	2011.04.01	차기 승급일	2011.04.01

정산년월	정산구분	정산결과추징환급액			분할추징환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급여년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2022.12	연말정산	874,090	92,510	0	2023.02	874,090	92,510	0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연말정산처리-정산세금관리]
- 2) 연말정산 작업 후, 추징 및 환급세액을 분할하여 작업하고자 할 때 월별 금액을 분리하여 입력한다.
- 3) 2023.02월에 생성되어 있는 추징/환급금을 확인 후, 2월에 정산할 금액으로 조정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2023.03월 세액으로 추가 생성 된다.
- 4) 기관별일괄분할납부 버튼은 해당기관의 전체 환급금을 비율로 분할할 수 있다.

공제년월	기관	환급인원	환급금액
2023.02	강원도교육청	48	-20,168,060
	간동고등학교	1	-457,850
	갑천고등학교	1	-2,203,630
	김화공업고등학교	1	-67,570
	소 계	51	-22,897,110
	합 계	51	-22,897,110

- 5) 정산년월과 분할방법을 선택한 후, 일괄분할율을 설정하고 일괄분할 작업을 한다. 이 때는 2개월 분할만 가능하다
- 6) 분할작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월분할율을 '0%'로 입력하고 작업한다.

**※ 정산세금관리 분할 예시**

- A근로자의 추징금이 소득세 150만원, 주민세 15만원 이고,  
2월 50만원, 3월 50만원, 4월 50만원 각각 분할추징을 원할 경우 작업방법

① 처음 조회하면 급여년월 2023.02월에 소득세 1,500,000, 주민세 150,000원 표시

분할추징환급액			
급여년월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2023.02	1,500,000	150,000	0

② 2023.02월 자료를 소득세 500,000원, 주민세 50,000원 으로 수정 후 저장하면

분할추징환급액			
급여년월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2023.02	500,000	50,000	0
2023.03	1,000,000	100,000	0

③ 다시 2023.03월 자료를 소득세 500,000원, 주민세 50,000원 으로 수정 후 저장하면

분할추징환급액			
급여년월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2023.02	500,000	50,000	0
2023.03	500,000	50,000	0
2023.04	500,000	50,000	0

**※ 정산세금관리 일괄분할 관련**

① 이월분할율(환급자) : 전체 환급자의 환급세액에 대해 분할율을 적용하여 분할한다.

② 2월공제세금(환급자) : 전체 환급자의 환급세액에서 2월급여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3월에 환급되도록 분할한다. 이 경우 분할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2월 급여가 처리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인사이동 등으로 연말정산대상자와 현재 급여처리하는 대상자가 달라진 경우, 연말정산대상자에 한해 2월세금이 공제되므로, 전체적으로 2월 세금이 0원으로 조정되지는 않는다. 전체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개인별 분할을 통해 작업하도록 한다.

## 5.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원천징수영수증

정산년월: 2022년 12월 | 연말정산 | 성명: 김윤지 | 주민번호: 900124-1505264

기관: 시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 직급순 | 전체 | 일괄출력

\* 지급년월 2008년 6월 이후부터 정액급식비 비과세금액은 근로소득-총지급액에서 제외.(2008년도 소득세법 개정)

소통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 < 2023 개정안 >

관리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지급명세서 <small>(<input type="checkbox"/>소득자 보편용 <input type="checkbox"/>탈행자 보편용 <input type="checkbox"/>탈행자 보고용)</small>		<table border="1"> <tr><td>거주구분</td><td>거주지 1제 거주지2</td></tr> <tr><td>거주지역</td><td>거주지역코드</td></tr> <tr><td>내외국성</td><td>내국인/외국인9</td></tr> <tr><td>외국인입국세출입종류</td><td>외1)주2</td></tr> <tr><td>외국납입소득 과징금과외 여부</td><td>외1)주2</td></tr> <tr><td>종교관련종사자 여부</td><td>외1)주2</td></tr> <tr><td>국적</td><td>국적코드</td></tr> <tr><td>세대주 여부</td><td>세대주</td></tr> <tr><td>연말정산 구분</td><td>계속근로</td></tr> </table>	거주구분	거주지 1제 거주지2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내외국성	내국인/외국인9	외국인입국세출입종류	외1)주2	외국납입소득 과징금과외 여부	외1)주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외1)주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
거주구분	거주지 1제 거주지2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내외국성	내국인/외국인9																				
외국인입국세출입종류	외1)주2																				
외국납입소득 과징금과외 여부	외1)주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외1)주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																				
징수	(1)법인명(상 호) 강원도교육청	(2)대표자(성 명) 김○○																			
	(3)사업자등록번호 221-88-00082	(4)주민등록번호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연말정산처리-원천징수영수증]
- 2) 연말정산 작업 후, 개인별 및 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 3) 연말정산 마감이후에는 [나의메뉴-급여자료-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각 개인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 4) 기관별 일괄출력 기능으로 전체 대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다.

## 6. 기관별마감관리

기관별마감관리

급여년월: 2022년 12월 | 급여구분: 연말정산 | 기관: 시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체마감선택 | 전체진행선택 | 마감기관/급여작업기관 | 마감기관수/급여작업기관수(0/23) | 저장

순번	기관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마감여부
1	강원도교육청	2023.01.05 08:47:38	2023.01.05 08:47:38	<input type="checkbox"/>

- 1) 메뉴위치 : [국공(사)립급여-연말정산-연말정산처리-기관별마감관리]
- 2) 연말정산 작업 후, 기관별 마감작업을 할 수 있다. 마감작업 이후 나의 업무에서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 Ⅲ 참고사항

####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 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 저축공제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p> <hr/>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p>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p>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p> <hr/> <p>공제 한도액</p>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30%)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80%	• 공제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구분</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직불·선불카드</td> <td>30%</td> </tr> <tr> <td>③ 현금영수증</td> <td>30%</td> </tr> <tr> <td>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td> <td>30%</td> </tr> <tr> <td>⑤ 전통시장</td> <td>40%</td> </tr> <tr> <td>⑥ 대중교통 ('22.7.1. ~ '22.12.31. 사용분)</td> <td>40% (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의 10% (연간 100만원 한도)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2022년 전통시장 사용 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 금액 중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li> <li>-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나이 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li> <li>-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은 공제 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li> </ul>	구분	비고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30%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⑤ 전통시장	40%	⑥ 대중교통 ('22.7.1. ~ '22.12.31. 사용분)
구분	비고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30%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⑤ 전통시장	40%															
⑥ 대중교통 ('22.7.1. ~ '22.12.31. 사용분)	40% (8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중견기업 3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 ~ '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출세액</th> <th>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3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130만원 초과</td> <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b>74만원</b>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b>66만원</b>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b>50만원</b>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7세이상)  출산·입양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금저축</th> <th rowspan="2">총급여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rowspan="2">공제율</th> </tr> <tr>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퇴직연금</td> <td>5.5천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 rowspan="2">15%</td> </tr> <tr> <td>1.2억원 이하</td> <td>(700만원)</td> <td>(900만원)</td> </tr> <tr> <td>과학기술인 공제</td> <td>1.2억원 초과</td> <td>300만원</td> <td>300만원</td> <td>12%</td> </tr> <tr> <td rowspan="2">ISA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td> <td>총급여액 5.5천만원</td> <td colspan="2" rowspan="2">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td> <td>공제율 15%</td> </tr> <tr> <td>5.5천만원 초과</td> <td>공제율 12%</td> </tr> </tbody> </table>	연금저축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퇴직연금	5.5천만원	4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과학기술인 공제	1.2억원 초과	300만원	300만원	12%	ISA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	총급여액 5.5천만원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공제율 15%	5.5천만원 초과	공제율 12%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 1.2억원 이하 400만원, 초과 300만원 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연금저축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퇴직연금	5.5천만원	4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700만원)	(900만원)																										
과학기술인 공제	1.2억원 초과	300만원	300만원	12%																									
ISA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	총급여액 5.5천만원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공제율 15%																									
	5.5천만원 초과			공제율 12%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2%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5%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20%·30%)**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공제율 적용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미숙아·선천 성 이상아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건강 보험산정 특례자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그 외 부양가족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의료비 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td> <td>㉠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td> </tr> <tr> <td>나. ㉢ + ㉣ ≥ 총급여액 × 3% &gt; ㉣인 경우</td> <td>㉠ + ㉡ + ㉣ - (총급여액 × 3% - ㉣)</td> </tr> <tr> <td>다. ㉠ + ㉡ + ㉣ ≥ 총급여액 × 3% &gt; ㉢ + ㉣인 경우</td> <td>㉠ + ㉡ + (총급여액 × 3% - ㉢ - ㉣)</td> </tr> <tr> <td>라. ㉠ + ㉡ + ㉢ + ㉣ ≥ 총급여액 × 3% &gt; ㉠ + ㉡ + ㉣인 경우</td> <td>㉠ + (총급여액 × 3% - ㉠ - ㉡ - ㉣)</td> </tr> </tbody> </table>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 ㉣)	라.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 ㉠,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가. ㉢ ≥ 총급여액 × 3% 인 경우	㉠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 ㉣)														
라.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교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 초· 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대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근로자 본인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기 부 금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2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5%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공제대상 한도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 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5%)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 2 서식 변경 사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2. 3. 18.>

(8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h3 style="margin: 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h3> <h3 style="margin: 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h3> <p style="margin: 0;">(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거주구분</td> <td>거주자1/비거주자2</td> </tr> <tr> <td>거주지국</td> <td>거주지국코드</td> </tr> <tr> <td>내·외국인</td> <td>내국인1 /외국인9</td> </tr> <tr> <td>외국인단일세율적용</td> <td>여 1 / 부 2</td> </tr> <tr> <td>외국법인소득 피과근로자 여부</td> <td>여 1 / 부 2</td> </tr> <tr> <td>종교관련종사자 여부</td> <td>여 1 / 부 2</td> </tr> <tr> <td>국적</td> <td>국적코드</td> </tr> <tr> <td>세대주 여부</td> <td>세대주1, 세대원2</td> </tr> <tr> <td>연말정산 구분</td> <td>계속근로1, 중도퇴사2</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득 피과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득 피과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⑤ 소재지(주소)	② 대표자(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소득자	⑥ 성 명 ⑧ 주 소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중(전)	중(전)	⑯-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⑮ 계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⑰ 국외근로	MOX																		
		⑰-1 야간근로수당	OOX																		
⑰-2 출산·보육수당		QOX																			
⑰-4 연구보조비		HOX																			
⑰-5																					
⑰-6																					
~																					
⑰-37																					
⑰ 수련보조수당		Y22																			
⑰ 비과세소득 계																					
⑰-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명 세	구 분			⑳ 소득세	㉑ 지방소득세	㉒ 농어촌특별세															
	㉓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액	㉔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 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㉕ 주(현)근무지																			
	㉖ 납부특례세액																				
	㉗ 차 감 징 수 세 액 (㉓-㉔-㉕-㉖)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8쪽 중 제3쪽)

㉗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 항목은 해당란에 "○"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국세청 계															
						기타 계															
0			○			국세청 기타															
	(근로자 본인)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2020년 전체사용분	2021년 전체사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함)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⑳ 비과세소득 계"란 및 "㉑-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 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㉒-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㉒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㉑ 총급여"란에는 "㉒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함)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㉒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㉓~㉕)"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㉓~㉕)"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㉖~㉙-1)"란과 "특별세액공제(㉚~㉛)"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 ④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③4 주택자금공제(⑦+④), ③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④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⑦+④+④), ④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④2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④3 우 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④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 ④8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③7 차감소득금액에서 ④6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④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④5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 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 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 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 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 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 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④1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 하 값만 버리며, ④6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④7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 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 사. 의료비(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 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 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③4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 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④7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료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 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 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 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 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b>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b>				
<b>1. 인적사항</b>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b>2. 연금계좌 세액공제</b>				
<b>1) 퇴직연금계좌</b>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b>2) 연금저축계좌</b>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b>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b>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b>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b>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b>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b>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b>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b>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작성 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 금액
				㉑ 계	㉒ 원금	㉓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명 (상 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유형	㉗ 계약 면적(㎡)	㉘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㉙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㉚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㉖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㉙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성 방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㉖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㉚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 3 나이스 세금계산 체계(급여 원천징수)

□ 나이스 메뉴

- 국공립/사립급여 > 월급여 > 기본사항관리 > 급여기본사항관리 > 세금내역(탭)

□ 산출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해설(국세청 제공)
  - ※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참조

□ 산출 방법

급여사항	당월수당	월별수당	당월공제	월별공제	세금내역	일할내역	보류내역	기초자료	대상생성	급여작업				
월	예외		지급대상		연소득 환산금액	근로 소득금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합
	여부	소득세	기간	과세금액			기본공제	특별공제	연금공제					
01	N		1	3,750,000	45,000,000	33,000,000	3,500,000	7,600,000	2,025,000	9,875,000	6	592,500	302,750	
02	N		1	3,850,000	46,200,000	34,140,000	3,500,000	7,558,000	2,079,000	11,003,000	6	660,180	323,054	
03	N		1	3,790,000	45,480,000	33,456,000	3,500,000	7,493,200	2,046,600	10,416,200	6	624,972	312,491	
04	N		1	3,990,000	47,880,000	35,736,000	3,500,000	7,709,200	2,154,600	12,372,200	15	775,830	357,749	
05	N		1	3,310,000	39,720,000	28,512,000	3,500,000	7,294,400	1,787,400	5,930,200	6	355,812	195,696	
06	N		1	4,030,000	48,360,000	36,192,000	3,500,000	7,752,400	2,176,200	12,763,400	15	834,510	375,353	
07	N		1	4,750,000	57,000,000	44,400,000	3,500,000	8,530,000	2,424,600	19,945,400	15	1,911,810	630,000	10
08	N		1	5,150,000	51,800,000	48,960,000	3,500,000	8,962,000	2,424,600	24,073,400	15	2,531,010	630,000	10
09	N		1	4,190,000	50,280,000	38,016,000	3,500,000	7,925,200	2,262,600	14,328,200	15	1,069,230	445,769	
10	N		1	4,910,000	58,920,000	46,224,000	3,500,000	8,702,800	2,424,600	21,596,600	15	2,159,490	630,000	10
11	Y	900,000												

※ 기본공제금액은 공제대상가족수 \* 150만원입니다.(공제대상가족수 = 본인 + 기본공제가 Y인 (배우자+부양가족수+20세이하자녀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건표)는 국세청(www.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바로가기](#)

1. 예외

- 1) 여부 : 세금예외(탭)에서 수기로 세금을 조정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 2) 소득세 : 세금예외(탭)에서 입력한 소득세

2. 지급대상

- 1) 기간 : 세금 계산 기간
  - 2014년 6월부터는 매월 분할하여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1로 표기

2) 과세금액 : 월급여 + 기 지급받은 상여의 1/12

- 상여 지급 이전 월에 대한 과세액은 과세금액 산출에서 제외(연말에 정산)
- 월급여 : 수당합계에서 비과세금액과 학비수당 제외
- 상여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급여외수당

<연간 과세금액 산정 예시>

수당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급여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정근수당	1,200,000	0	0	0	0	0	1,200,000	0	0	0	0	0
성과상여금	0	0	0	3,600,000 (월말지급)	0	0	0	0	0	0	0	0
명절휴가비	1,800,000 (월말지급)	0	0	0	0	0	0	0	1,800,000 (급여포함)	0	0	0
연가보상비	0	0	0	0	0	0	1,200,000 (급여포함)	0	0	0	0	1,200,000 (월말지급)
급여외수당	1,200,000 (월초지급)	0	0	0	0	0	0	0	0	1,200,000 (월초지급)	0	0
과세금액 (월급여)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과세금액 (정근수당)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과세금액 (명절휴가비)	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과세금액 (성과상여금)	0	0	0	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과세금액 (연가보상비)	0	0	0	0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과세금액 (급여외수당)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과세금액 합 (2015년 이후)	3,200,000	3,350,000	3,350,000	3,350,000	3,650,000	3,650,000	3,850,000	3,850,000	4,000,000	4,100,000	4,100,000	4,100,000

3. 연소득환산금액 : 과세금액(2-2) \* 12

4. 근로소득금액 : 연소득환산금액(3)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공제 한도 : 2,000만원

5.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공제대상 가족수 \* 150만원

- 공제대상 가족수 : [가족사항(탭)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체크한 인원 수 (본인은 무조건 포함)] + (20세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12.31. 이전)	20세 이하 (02.01.01. 이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 20세이하 자녀 수 : 2014년 3월 이전은 20세 이하 자녀 수 전체 중에서 산정, 2014년 3월부터는 20세 이하 자녀 수 중에서 기본공제가 Y인 자녀 수 중에서 산정

2) 특별공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조)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	

※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연금공제 : 당월 기여금 \* 12

6.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4) - 기본공제(5-1) - 특별공제(5-2) - 연금공제(5-3)

7. 세율 : 과세표준(6) 구간별 세율이 표기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8. 산출세액 : 과세표준(6)에 기본세율(7)을 적용하여 계산

9.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액	비고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5,000 + 130만원 초과금액 30%	-

총급여액	공제한도	비고
3,300만원 이하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계산 금액과 66만원 중 큰 금액	-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계산 금액과 50만원 중 큰 금액	-

10. 결정세액 : {산출세액(8) - 근로소득세액공제(9)} / 12

※ 원 단위 절사